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 차 례

|                                                               |           |
|---------------------------------------------------------------|-----------|
| <b>I. 개관</b>                                                  | <b>1</b>  |
| 1. 조직 및 정원                                                    | 1         |
| 2. 예산안 개요                                                     | 2         |
| 3. 세출예산안 명세                                                   | 4         |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 8         |
| <b>II. 검토의견</b>                                               | <b>13</b> |
| 1.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 13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13        |
| 나. 법제조정정책관실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 발간 필요성 재검토 필요                        | 14        |
| 다. 법령해석국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19        |
| 2. 법령정보제공(1031-300)                                           | 24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24        |
| 나.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신청 및 수수료율 제고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5        |
| 다.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내 독서대회 운영 관련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32        |
|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 35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35        |
| 나.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36        |
|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 41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41        |

|                                                      |           |
|------------------------------------------------------|-----------|
| 나. 외국어 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42        |
| <b>5. 법제정비(1032-301) .....</b>                       | <b>47</b>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47        |
| 나. 미래법제 사업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                        | 48        |
| <b>6.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b>             | <b>54</b>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54        |
| 나. 정보취약계층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 55        |
| 다.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업계획 내실화<br>필요 ..... | 61        |
| <b>7.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b>            | <b>69</b>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69        |
| 나.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계획 변경에 따른 임차료 감액 필요 .....            | 70        |
| 다. 법제교육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73        |
| <b>8. 정책연구비 관련 .....</b>                             | <b>76</b> |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76        |
| 나.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공정성 담보 및 연구수행기관 다변화 방안 마<br>련 필요 ..... | 77        |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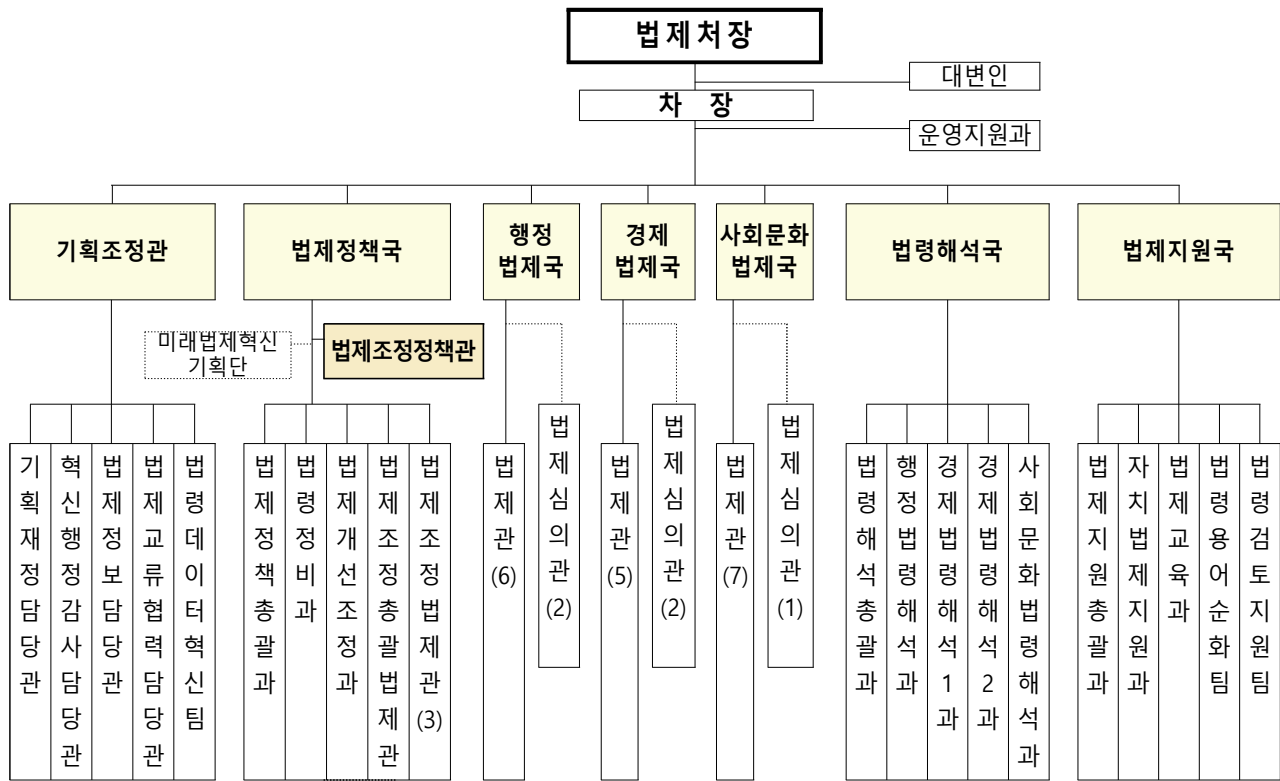
1. 최근 5년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2. 2024년도 주요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2024년 9월 말 기준, 법제처는 1조정관, 6국, 1정책관, 5심의관, 22법제관, 17과(담당관), 3팀, 1기획단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은 총 240명이며 현원은 총 235명임.

< 법제처 조직도 >



< 법제처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4. 9월 말 기준)

| 구 분 | 합계  | 정무직 | 특정직 | 별정직 | 일반직 |
|-----|-----|-----|-----|-----|-----|
| 정 원 | 240 | 1   | -   | -   | 239 |
| 현 원 | 235 | 1   | -   | -   | 234 |

자료: 법제처

## 2. 예산안 개요

### 가. 예산규모

- 내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462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600만원(1.9%)이 증액되었음.

#### < 2024년도 세출예산과의 증감 대비 >

(단위: 백만원)

| 2024년도 예산<br>(A) | 2025년도 예산안<br>(B) | 증 감     |       |
|------------------|-------------------|---------|-------|
|                  |                   | 금액(B-A) | 비율(%) |
| 45,418           | 46,284            | 866     | 1.9   |

자료: 법제처

### 나. 정부재정규모와의 비교

- 법제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2억 8,400만원은 정부예산 일반회계 총규모 477조 6,296억 4,100만원의 약 0.01%에 해당되어 2024년도와 비슷한 비율임.

#### < 정부재정규모와 법제처 예산 규모의 대비(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정부예산        | 법제처예산  | 비율(%) |
|-------------|-------------|--------|-------|
| 2024년도 예산   | 449,526,707 | 45,418 | 0.01  |
| 2025년도 예산안  | 477,629,641 | 46,284 | 0.01  |
| 전년대비 증가율(%) | 6.3         | 1.9    |       |

자료: 법제처

#### 다.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법제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30억 5,800만원) 증액된 484억 7,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4.5%(△21억 9,200만원)가 감액된 462억 8,4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 2025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br>사항별 | 요구액(A) | 조정액(B) | 증감      |       | 증감사유                                           |
|------------|--------|--------|---------|-------|------------------------------------------------|
|            |        |        | 금액(B-A) | 비율(%) |                                                |
| 인 건 비      | 24,257 | 23,780 | △477    | △2.0  | ○ 불용률 등 고려하여 일부 조정                             |
| 기본경비       | 5,320  | 5,287  | △33     | △0.6  | ○ 상용임금 등 일부 조정                                 |
| 사 업 비      | 18,899 | 17,217 | △1,682  | △8.9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등 예산 일부 조정 반영 |
| 합 계        | 48,476 | 46,284 | △2,192  | △4.5  |                                                |

자료: 법제처

### 3. 세출예산안 명세

#### 가. 경비별 명세

□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2024년도 대비 증감비율 및 전체 예산 대비 경비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는 23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가 증액(11억 6,8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51.4%를 차지함.
- 기본경비는 52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가 증액(2억 5,5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11.4%를 차지함.
- 사업비는 172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가 감액(5억 5,7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37.2%를 차지함.

#### < 2025년도 세출예산안 경비별 명세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br>예산액(A) | 2025년도<br>예산안(B) | 증 감          |            | 구성비<br>(%) |
|-------|------------------|------------------|--------------|------------|------------|
|       |                  |                  | 금 액<br>(B-A) | 비 율<br>(%) |            |
| 인 건 비 | 22,612           | 23,780           | 1,168        | 5.2        | 51.4       |
| 기본경비  | 5,032            | 5,287            | 255          | 5.1        | 11.4       |
| 사 업 비 | 17,774           | 17,217           | △557         | △3.1       | 37.2       |
| 합 계   | 45,418           | 46,284           | 866          | 1.9        | 100.0      |

자료: 법제처

## 나. 인건비 명세

- 인건비는 전년 대비 5.2% 증액된 237억 8,000만원이며, 동 경비로 편성된 사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등임.
- 법제처는 인건비 집행추이 및 처우개선분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설명함.

### < 2025년도 세출예산안 인건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예산<br>(A) | 2025년 예산안<br>(B) | 증 감     |     |
|-------|-----------------|------------------|---------|-----|
|       |                 |                  | 금액(B-A) | 비율  |
| 총 액   | 22,612          | 23,780           | 1,168   | 5.2 |
| 보수 등  | 22,436          | 23,599           | 1,163   | 5.2 |
| 연가보상비 | 176             | 181              | 5       | 2.8 |

자료: 법제처

## 다. 기본경비 명세

-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1% 증액된 52억 8,700만원이며, 법제처의 일반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지원 등임.

### < 2025년도 세출예산안 기본경비 명세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예산<br>(A) | 2025년도 예산안<br>(B) | 증감      |     |
|-----------------|------------------|-------------------|---------|-----|
|                 |                  |                   | 금액(B-A) | 비율  |
| 합 계             | 5,032            | 5,287             | 255     | 5.1 |
|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 1,755            | 1,780             | 25      | 1.4 |
| ○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 | 3,277            | 3,507             | 230     | 7.0 |

자료: 법제처

## 라. 주요사업비 명세

□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3.1% 감액된 172억 1,700만원임.

□ 내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액사업은 총 3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대비 2.4%(4,000만원) 증액된 17억 200만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대비 2.6%(3,400만원) 증액된 13억 6,200만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비가 전년대비 46.7%(7억 2,600만원) 증액된 22억 8,100만원임.

□ 감액사업은 총 7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법령정보제공’ 사업비가 전년대비 △9.7%(△1억 6,600만원) 감액된 15억 5,200만원,
- ‘법령심사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7.2%(△2,400만원) 감액된 3억 1,100만원,
- ‘법제정비’ 사업비가 전년대비 △10.6%(△1억 4,000만원) 감액된 11억 8,400만원,
- ‘행정법제 혁신’ 사업비가 전년대비 △34.9%(△2억 6,100만원) 감액된 4억 8,600만원,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비가 전년대비 △8.0%(△6억 9,800만원) 감액된 80억 4,600만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비가 전년대비 △17.1%(△5,000만원) 감액된 2억 4,300만원,
-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비가 전년대비 △26.5%(△1,8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 2025년도 주요사업비 세부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도<br>예산<br>(A) | 2025년도<br>예산안<br>(B) | 증감      |       |
|-------------------|---------------------|----------------------|---------|-------|
|                   |                     |                      | 금액(B-A) | 비율(%) |
| 합 계               | 17,774              | 17,217               | △557    | △3.1  |
| ○ 법령정보제공          | 1,718               | 1,552                | △166    | △9.7  |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1,662               | 1,702                | 40      | 2.4   |
|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 1,328               | 1,362                | 34      | 2.6   |
| ○ 법령심사지원          | 335                 | 311                  | △24     | △7.2  |
| ○ 법제정비            | 1,324               | 1,184                | △140    | △10.6 |
| ○ 행정법제 혁신         | 747                 | 486                  | △261    | △34.9 |
|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8,744               | 8,046                | △698    | △8.0  |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1,555               | 2,281                | 726     | 46.7  |
| ○ 외국법제기관교류        | 293                 | 243                  | △50     | △17.1 |
| ○ 법제정책연구개발        | 68                  | 50                   | △18     | △2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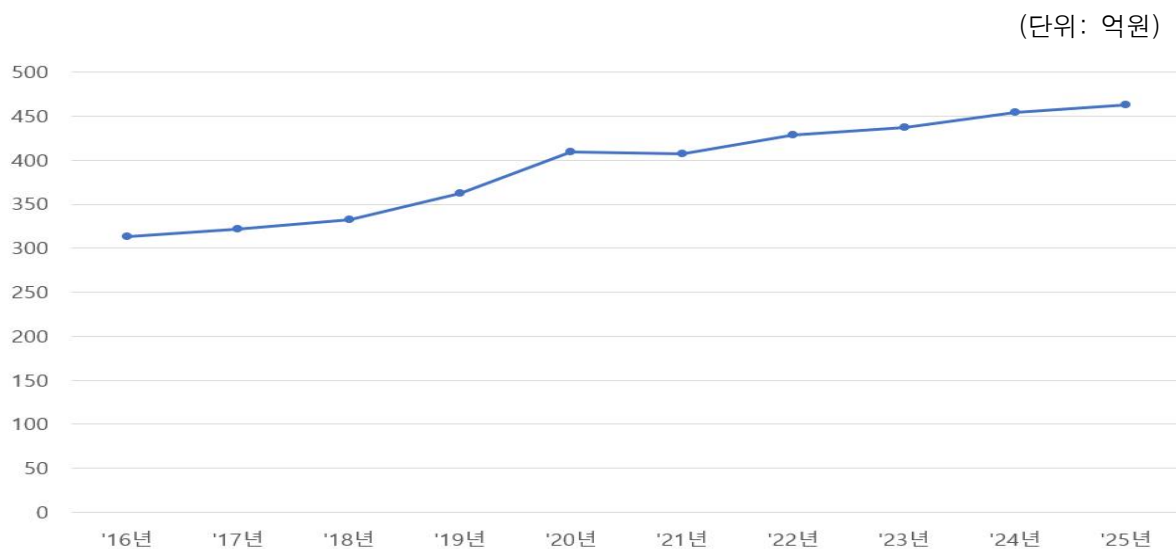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내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462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 증가 비율은 1.9%로서, 법제처의 최근 10년간 예산액 평균 증가율인 4.4%보다도 낮고,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6.3%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법제처 예산액 추이 >



(단위: 억원, %)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예산액 | 313  | 322  | 332  | 362  | 409  | 407  | 429  | 437  | 454  | 463  |
| 증감액 | 12   | 9    | 10   | 29   | 47   | △2   | 22   | 8    | 17   | 9    |
| 증가율 | 3.8  | 2.9  | 3.2  | 8.8  | 13.0 | △0.3 | 5.4  | 1.8  | 3.9  | 1.9  |

자료: 법제처

□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법제조정정책관실 “최신 입법 트렌드” 발간을 위하여 3,1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신 입법 트렌드”의 구성과 내용이 다른 소식지 및 발간물과 차별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해 일반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세미나 행사의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탁이 필수적인 부분만을 추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법제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중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10년간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신청 및 선발 경쟁률이 평균 1.3:1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홍보 방안 마련 없이 홍보예산(1,353만원)을 오히려 삭감하여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업활성

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법제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중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내 독서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 마일리지 점수(30점)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도서를 배포하고, 감상문 제출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서 선정에 있어 각 1권의 도서만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참가자 별도 모집과 더불어 감상문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 도서를 폭넓게 지정하여 도서 선정에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중 세계법제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연구 사업”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추진 체계에 비추어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번역 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번역본 감수 업무를 수행함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에서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책자형 외국어콘텐츠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외국어 법령정보 제공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사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곱째, 법제처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미래법제 포럼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AI 전략최고위협의회의에서도 AI 등 미래기술과 관련한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포럼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동 행사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완·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 여덟째, 법제처는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내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예산 4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국민제안 및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화면구성 개편 및 모바일 환경 적합 화면 표출 등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홉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에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데이터 오류 또는 정확성 확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 관련 정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됨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 공유 및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열째, 법제처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의실 사용료 4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예산 편성 이후 무상 사용으로 변경된 바, 임차료 예산의 전액 감액 조정이 필요함.
- 열한째,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법제교육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망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열두째, 법제처는 정책연구비 예산으로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체결 비중이 높고[57건 중 34건(59.6%)],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2건(35.3%)을 한국법제연구원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II. 검토의견

### 1.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법제처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와 각 관서의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35억 7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억 3,000만원(7%)이 증가하였음.

#### 【 2025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 사 업 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기관운영기본경비 | 2,570       | 3,277          | 3,507           | 230         | 7.02    |
| 일반수용비    | 1,354       | 1,527          | 1,690           | 163         | 10.67   |
| 공공요금및제세  | 53          | 85             | 101             | 16          | 18.82   |
| 피복비      | 0.6         | -              | 0.6             | 1           | -       |
| 급식비      | 3           | 3              | 3               | -           | 0.00    |
| 임차료      | 176         | 250            | 278             | 28          | 11.20   |
| 유류비      | 9           | 15             | 15              | -           | 0.00    |
| 시설장비유지비  | 68          | 94             | 100             | 6           | 6.38    |
| 일반용역비    | 64          | 111            | 165             | 54          | 48.65   |
| 국내여비     | 151         | 186            | 228             | 42          | 22.58   |
| 국외업무여비   | 14          | 16             | 16              | -           | 0.00    |
| 국외교육여비   | 20          | -              | -               | -           | -       |
| 관서업무추진비  | 142         | 149            | 179             | 30          | 20.13   |
| 손실보상금    | -           | -              | -               | -           | -       |
| 포상금      | -           | 0.1            | 0.1             | -           | 0.00    |
| 공사비      | 251         | 75             | 160             | 85          | 113.33  |
| 자산취득비    | 265         | 315            | 521             | 206         | 65.40   |
| 무형자산     | -           | 450            | 50              | △400        | △88.89  |

자료: 법제처

## 나. 법제조정정책관실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 발간 필요성 재검토 필요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지원하며 의원입법 관련 법정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 12. 27. 「법제처 직제」 개정<sup>1)</sup>을 통해 법제정책국에 법제조정정책관이 신설됨.
- 이전에도 법제처는 의원입법 전담조직으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과 3개 법제조정법제관실을 두고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 해소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sup>2)</sup>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이견 조정 업무를 수행할 국장급 전담 인력이 없어 본 협의회 대신 법제처 과장이 주재하고 부처 사무관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가 주로 개최되었고,

1) 「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조정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10. 삭제 <2017. 2. 28.>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지원 및 총괄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부처간 이견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바, 법제처는 결정권자로서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함.

### 【 최근 5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내역 】

| 연 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9월 |
|---------------------------------|------|------|------|------|------|---------|
| 안건수                             | 64   | 97   | 96   | 72   | 107  | 81      |
| 본협의회 개최 건수                      | 0    | 0    | 1    | 1    | 5    | 7       |
| 조정건수                            | 49   | 88   | 78   | 62   | 88   | 80      |
| 조정건수 중 입법완료건수                   | 17   | 15   | 19   | 16   | 27   | 0       |
| 동일 안건(의안번호)을<br>건으로 하여 계산한 개최건수 | 59   | 92   | 89   | 63   | 45   | 72      |

※ '조정'은 '일부조정'을 포함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한 번에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안을 달리하여 상정한 경우를 별도 건으로 포함함

자료: 법제처

- 2025년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된 법제조정정책관실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은 전년 대비 2,700만원(63.5%) 증가한 7,000만원임. 2024년 의원입법 업무편람 및 안내책자 등 발간 예산 1,250만원이 2025년에는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 발간 3,160만원으로 변경·확대된 것이 예산안 증액의 주요 사유임.

**【 법제조정정책관실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 편성 내역 】**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
| 1) 법제조정정책관실 일반수용비 : 16,900천원            | 1) 법제조정정책관실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
| 2)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 연찬회 개최 : 7,343천원 | 2)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 연찬회 개최 : 7,343천원 |
| 가) 교재발간 : 11,620원×150부=1,743천원          | 가) 교재발간 : 11,620원×150부=1,743천원          |
| 나) 발표자 원고료 및 참석수당 : 300,000원×8인=2,400천원 | 나) 발표자 원고료 및 참석수당 : 300,000원×8인=2,400천원 |
| 다) 기타 회의 물품구입 등 : 3,200,000원×1회=3,200천원 | 다) 기타 회의 물품구입 등 : 3,200,000원×1회=3,200천원 |
| 3) 법률안의 정부 내 이견 조정을 위한 자문 : 3,000,000원  | 3) 법률안의 정부 내 이견 조정을 위한 자문 : 3,000,000원  |
| 4) 학습회 발표사례비 등 운영비 200,000원×5회=1,000천원  | 4) 학습회 발표사례비 등 운영비 200,000원×5회=1,000천원  |
| 5)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물품구입비 : 2,000천원           | 5)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물품구입비 : 2,000천원           |
| 6) 의원입법 업무편람 및 안내 책자 등 발간 : 12,500천원    | 6) 의원입법 관련 안내 자료 발간 : 31,560천원          |
| 가) 업무편람 발간 : 20,000원×500부=10,000천원      | 가) 편집 및 인쇄비 : 8,100원×300부×12회=29,160천원  |
| 나) 안내책자 제작 : 500원×5,000부=2,500천원        | 나) DM 및 발송 : 1,000원×200부×12회=2,400천원    |
| <b>계 : 42,743천원</b>                     | <b>계: 69,903천원</b>                      |

□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란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최신 입법 트렌드”를 말하는데, “최신 입법 트렌드”는 월별 발의법안, 공포법안의 통계 및 추세 분석 등 국회의 입법동향,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안,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소개하고 최신 법제 동향을 담은 월간 소식지임.

2024년 10월 현재 법제조정정책관실은 별도 예산 없이 매월 pdf 파일 형태로 “최신 입법 트렌드”를 제작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sup>3)</sup>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이를 인쇄하고 우편 발송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

3) <https://www.moleg.go.kr/legtrn/legtrnList.mo?mid=a10407000000>

- 매월 국회의 입법동향을 분석하여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법제처는 매월 제작비용으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 입법 트렌드”의 구성과 내용이 다른 소식지 및 발간물과 차별성이 있어 별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신 입법 트렌드”는 I. 최신 발의 법률안, II. 최신 공포 법률, III. 국회 동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최신 공포 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국회보」의 내용 중 본회의 의결 법률안을 소개하는 ‘새 법률 소개’와 거의 동일하고,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토론회를 소개하는 ‘국회 동향’의 경우 「국회보」의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부분과 내용상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법제처는 이미 월간 소식지인 “법나들이” 및 “새 법령 소개” 등을 통해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별도의 소식지를 추가로 제작하기보다는 기존 소식지에 “최신 입법 트렌드”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최신 입법 트렌드”와 “국회보”의 비교 】

최신 입법 트렌드 7월호 11pg

국회보 8월호 39pg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III

국회 동향

○ 2024년 7월에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토론회 등은 총 134건이다.

○ 세부적으로는 주요 쟁점·이슈 분야 21건, 일반행정 분야 25건, 경제 분야, 38건, 사회 분야에서 50건이 개최되었다.

1. 주요 쟁점-이슈 분야(AI· 의료개혁· 저출산)

분야

관련 부처

행사개요

주최

장소

일시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김우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7.11.(목) 10:00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일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7.16.(화) 14:00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7.23.(화) 14:00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149건, 7.1~7.26.)

일시

세미나

주최

참소

7.8(월)

백우장 3번차: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획

나경원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8(월)

아산7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 토론회

이인선, 김민서 의원실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7.8(월)

타워크메인 동사자 환경 직업개발 정책 토론회

전용기, 윤종근, 김태선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7.8(월)

2024 가바인스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김명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8(월)

[2024 사회대통합 포럼] 우리는 대한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김주영, 박재일, 박종배, 백승민, 이기규, 이수진, 한창배, 김위상, 김형철, 임이지, 김재원, 윤종오, 안종덕, 이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8(월)

[K-유통업]을 위한 연속 세미나 4기 상숙제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백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7.8(월)

글로벌 보건으로 진단 현황상 개선과 한국의 역할

차지호,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8(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김동, 남인순, 박정현, 백배린, 서영교, 서용진, 송재복, 임태원, 윤해인, 이원희, 이용선, 이학원, 이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20(화)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20(화)

기후위기과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이소영, 남인순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20(화)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백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20(화)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헌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행안

장성호, 조혜숙, 권철승, 이인선, 박종현, 김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7.20(화)

[노 후계회]도시 이슈와 극복 방안]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세사업 출신회 전략

한은호, 진홍철, 서영교, 손영주, 이재강, 조원식, 한창배, 황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7.20(화)

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국회자살예방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7.20(화)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한창민, 문진식, 김남근, 이연희, 황유하, 신장식, 윤종오, 한창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20(화)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이동구, 이학원, 김주영, 김태선, 최재철, 박종배, 정재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7.20(화)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7.20(화)

북한 제형의 실태와 대응 방안 세미나

박종근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20(화)

대통령기록관 개정 전문가 간담회

윤건영, 한창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또한, 법제처는 “최신 입법 트렌드”를 제작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40명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150명에게 발송하기 위한 비용 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행정법제위원회<sup>4)</sup>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sup>5)</sup>의 업무는 법 제도 및 법 적용기준, 법령해석 등과 관련된

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 또는 심의로 최신 입법 트렌드의 분석내용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책자를 우편 발송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 다. 법령해석국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법제처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400만원 증가한 1억 6,500만원임.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및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예산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 기관운영기본경비-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 편성 내역 】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
| ○ 210-14(일반용역비) : 111,000천원                          | ○ 210-14(일반용역비) : 164,838천원                          |
| 1.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 10,000,000원×1회=10,000천원 | 1.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 10,000,000원×1회=10,000천원 |
| 2.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 5,000천원                       | 2.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 5,000천원                       |
| 3. 기관 공통 용역비 : 80,000천원                              | 3. 기관 공통 용역비 : 80,000천원                              |
| 4.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 16,000천원                            | 4.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 19,838천원                            |
| 가. 스크랩 및 긴급모니터링: 1,330,000원×12월 =15,960천원            | 가. 스크랩 및 긴급모니터링: 1,653,190원×12월 =19,838천원            |
| 나. 조정계수: 40천원                                        | 5.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 50,000천원                            |

자료: 법제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국이 20주년을 맞이하여, 법령해석제도 20주년 백서를 발간(일반수용비 19,600원\*1,000부=19,600천원 편성)<sup>6)</sup>하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함. 참고로, 법제처는 법령해석 10주년에도 유사한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 바 있음.

### 【 2015년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

| 시 간                                            | 내 용                                                                                                                 |                                                                          |
|------------------------------------------------|---------------------------------------------------------------------------------------------------------------------|--------------------------------------------------------------------------|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br>○ 일시/장소 : 2015. 7. 9.(목), 14:00 /대전 00호텔<br>○ 참석대상 : 법제처장, 법제연구원장 등 내빈 지자체 해석담당자, 법제처 직원 |                                                                          |
| 14:30 ~ 15:00<br>전체진행: 000과장<br>(법령해석총괄과)      | 개회                                                                                                                  | 진행 : 법령해석총괄과장<br>개회사 : 법제처 처장 인사말씀<br>축사 : 법사위원장, 법제연구원장                 |
| 15:00 ~ 16:20(80')<br>진행: 000 변호사<br>(법무법인 00) | 제1세션                                                                                                                | 주제 :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
|                                                |                                                                                                                     | 발제 (30') 000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지정토론 (30') 000 과장(행정법령해석과)<br>000 교수(고려대, 전 해석위원)<br>000 교수(단국대, 전 해석위원) |
|                                                |                                                                                                                     | 종합토론 (20')                                                               |
| 16:30 ~ 17:40(70')<br>진행: 000과장<br>(경제법령해석과)   | 제2세션                                                                                                                | 주제 :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                                             |
|                                                |                                                                                                                     | 발제 (20') 000 과장(사회문화법령해석과)                                               |
|                                                |                                                                                                                     | 지정토론 (30') 000 교수(충남대, 현 해석위원)<br>000 변호사(00 법률사무소)<br>000 기장(0000항공)    |
|                                                |                                                                                                                     | 종합토론 (20')                                                               |
| 17:40 ~ 18:00                                  | 휴 식                                                                                                                 |                                                                          |
| 18:00 ~ 19:30                                  | 만찬                                                                                                                  |                                                                          |

6) ▪ 중앙행정기관(59개) 및 지자체(246개), 시·도교육청(17개), 입법부(의원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등), 사법부 등 배포 예정

□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행사 기획·홍보·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전반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진행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sup>7)</sup>하고 있음.

### 【 세미나 행사 위탁 관련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 세부내용                                                                                                                                                                                      |
|---------------------------------------------------------------------------|-------------------------------------------------------------------------------------------------------------------------------------------------------------------------------------------|
| ① 행사 기획·연출·운영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연출</li> <li>■ 행사 장소 및 출연자 섭외</li> <li>■ 행사운영계획 수립(행사인원 배치, 무대설비·물품 관리 등)</li> </ul>                                                  |
| ② 홍보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기획 및 소재 발굴</li> <li>■ 언론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행사 전·후 홍보</li> <li>■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 등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실행</li> </ul>                       |
| ③ 제작물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해석국 설립 20주년 기념 영상 등 제작</li> <li>■ 오프닝, 축하 영상 등 제작</li> <li>■ 무대 연출, 영상 장비 및 음향 장비 준비 및 운영</li> <li>■ 아나운서, 자막, 수어통역, 동시통역 등 준비 및 운영</li> </ul> |
| ④ 프로그램 연출·운영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구성 계획 제안</li> <li>■ 프로그램 출연진 구성, 섭외, 계약체결, 행사 진행 및 관리</li> <li>■ 행사장 무대구성 및 영상 기획 및 제작, 현장 연출</li> <li>■ 사회자, 출연자 섭외 및 비용 지급</li> </ul>     |
| ⑤ 유인물, 인쇄물 및 홍보물 등(현수막, 초청장, 비표, 리플릿, 쇼핑백 등)의 디자인·제작·설치·배포·발송·게시 등에 관한 사항 |                                                                                                                                                                                           |
| ⑥ 참석자 모집 및 주요인사 참석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장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li> <li>■ 안내데스크 운영, 주요인사 안내 계획 수립</li> </ul>                                                                                   |
| ⑦ 행사장 안전예방 및 방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및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①사전교육, 인력 배치 등, ②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피해보상 계획 수립 등)</li> </ul>                                                                    |
| ⑧ 행사 기록(사진, 동영상 촬영 포함) 및 행사 결과 보고                                         |                                                                                                                                                                                           |

자료: 법제처

7) 예산 산출내역 50,000천원 = 법령해석제도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한 위탁 용역비 50,000,000원 \* 1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  
용역비 편성 방침으로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  
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  
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8)</sup>.

그러나 동 세미나는 법제처에서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입법체험행사(일반용역비 어린이법제관 1억 700만원 및 청소  
년법제관 3,400만원 편성) 또는 외빈을 초청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  
가 회의(일반용역비 1억 700만원 편성)와 다르게 법제처 및 법령해  
석 관계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기념식 및 법령해석을 주제로 한 실  
무적 토론이 주된 행사 내용임.

이를 고려하면, 동 세미나 행사의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대행  
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홍보물·영상물  
제작 또는 원활한 행사를 위한 행사 장비 구비 등 위탁이 필수적인  
부분만을 추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으로 최근 4년간 5회 개최된  
공청회·설명회의 경우 동 세미나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

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g 232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  
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

일반용역비의 집행액이 98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행정법제 혁신(1032-302)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일반용역비(210-14) 집행액 】

(단위: 천원)

| 연도  | 일시/장소                | 내용                        | 참석대상                                                          | 집행액    |
|-----|----------------------|---------------------------|---------------------------------------------------------------|--------|
| '20 | 3.12./정부세종청사(세종)     | 행정기본법 제정안<br>충청권(온라인) 공청회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br>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br>연구계·학계·법조계·공무원 등 공청회 참가 패널 | 22,421 |
| '20 | 4.22./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 행정기본법 제정안<br>호남권 공청회      | 일반국민                                                          | 15,588 |
| '20 | 4.29./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부산) | 행정기본법 제정안<br>영남권 공청회      | 일반국민                                                          | 15,736 |
| '22 | 9.2./세종컨벤션센터(세종)     | 지방자치단체 대상<br>행정기본법 설명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9,790  |
| '23 | 5.10./백범김구기념관(서울)    | 행정기본법 개정안<br>대국민 공청회      | 일반국민                                                          | 18,460 |
|     |                      |                           | 평 균                                                           | 16,399 |

### 【 2023년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행사 계획 】

| 시 간           | 내 용                                                                                                    |
|---------------|--------------------------------------------------------------------------------------------------------|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br>○ 일시/장소 : 2023. 5. 10.(수), 14:0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br>○ 법제처 유튜브 채널 생중계         |
| 14:00 ~ 14:10 | 개회사 및 축사                                                                                               |
| 14:10 ~ 14:40 | 주제발표: 행정기본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
| 14:50 ~ 16:00 | 개정안 토론<br>000 서울대 교수(좌장)<br>000 서울대 교수, 000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br>000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000 중앙대 교수, 000 법률사무소 변호사 |
| 16:10 ~ 16:40 |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자료: 법제처

## 2. 법령정보제공(1031-300)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령정보제공(1031-30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안이나 법제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 도모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제도 운영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5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9.7%)이 감액되었음.

## 【 2025년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예산<br>본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A) | (B-A)/A |
|--------------------|-------------|--------------------|-----------------|---------|---------|
|                    |             |                    |                 |         |         |
| 법령정보제공             | 1,890       | 1,718              | 1,552           | △166    | △9.7    |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1,092       | 885                | 746             | △139    | △15.7   |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 388         | 372                | 353             | △19     | △5.1    |
| 한눈에 이해되는<br>법령정보제공 | 411         | 461                | 453             | △8      | △1.7    |

자료: 법제처

### 나.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신청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중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어린이들의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전국에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 후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1%인 1,9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들에게 토론마당, 기본법제교육, 법기관 탐방, 법안 만들기, 독서대회 등의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활동 세부 내용 】

| 입법체험활동명          | 입법체험활동 세부 내용                                                          |
|------------------|-----------------------------------------------------------------------|
| 토론마당             |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
| 기본법제교육<br>(1,2차) |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기본 법 교육 및 생활법령 퀴즈 등 진행                              |
| 참여심사             | 법제관이 되어 모의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활동 실시                                        |
| 법기관 탐방           |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등 법 관련 기관 탐방 기회 제공                              |
| 법안 만들기           | 모의로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 실시                                     |
| 법령퀴즈<br>골든벨 대회   |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실시                                   |
| 독서대회             |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
| 어울림한마당           |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법제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 한마당              |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 법제관 격려를 위한 수료 행사 진행                              |

자료: 법제처

□ 어린이법제관의 선발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어린이법제관은 매년 3~4월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sup>9)</sup>를 통해 신청을 받고, 선발된 어린이 법제관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등록한 각자의 이메일과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견쓰기 등 온라인 활동과 각종 오프라인 행사 참가 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10년간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한 신청자 및 선발자 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591명 신청 중 1,300명을 선발하여 1.2:1의 경

9) <https://www.moleg.go.kr/index.es?sid=a2>

쟁률을 기록하였는바, 최근 10년간 평균 경쟁률 역시 1.3:1의 경쟁률을 보여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sup>10)</sup>.

### 【 최근 10년간 어린이법제관 신청 및 선발 현황 】

(단위: 명)

| 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신청 인원 | 1,852 | 2,145 | 1,666 | 1,981 | 1,567 |
| 선발 인원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 경쟁률   | 1.4:1 | 1.7:1 | 1.3:1 | 1.5:1 | 1.2:1 |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신청 인원 | 984   | 1,057 | 1,239 | 1,963 | 1,591 |
| 선발 인원 | 984   | 1,057 | 1,211 | 1,300 | 1,300 |
| 경쟁률   | 1.0:1 | 1.0:1 | 1.0:1 | 1.5:1 | 1.2:1 |

\*참고로, 2022년~2022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법제처

- 한편,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이후 수료 기준을 살펴보면, 선발 이후 1년간의 활동을 합산한 마일리지 총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어린이법제관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아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총점 1,000점 이상인 경우 소정의 상품<sup>11)</sup>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10)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수도권외의 경우 신청율이 높아 조기 마감율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의 경우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밝힘.

11) 문구세트, 2023년 기준 92명에게 제공

## 【 어린이법제관 활동별 마일리지 부여 기준 】

| 활동 구분                      |                    |                          | 어린이법제관 활동                                            | 마일리지<br>점수        |
|----------------------------|--------------------|--------------------------|------------------------------------------------------|-------------------|
| 오프라인 활동                    | 입법체험 행사 참여         |                          | ☞ 행사 참여 시                                            | 20점               |
|                            | 수상 시<br>(법령퀴즈 골든벨) |                          | ☞ 우수상 수상 시                                           | 30점               |
| 온라인 활동<br>(어린이법제처<br>홈페이지) | 어린이법제관<br>광장       | 독서감상문<br>게시판             | ☞ 게시글 작성<br>※감상문은 한 번만 작성할 수 있음                      | 20점               |
|                            |                    |                          | ☞ 우수상 수상 시                                           | 30점               |
|                            |                    | 입법 체험<br>활동 소감문          | ☞ 게시글 작성<br>※행사당 소감문은 한 번만 작성가능                      | 5점<br>(1편당)       |
|                            |                    |                          | ☞ 우수 활동 소감문으로 채택                                     | 10점<br>(1편당)      |
|                            |                    | 생활 속<br>법령 소개<br>(퀴즈 문제) | ☞ 퀴즈 문제 정답 맞추는 경우                                    | 10점               |
|                            |                    |                          | ☞ 퀴즈 문제 정답 제출했으나<br>맞추지는 못한 경우                       | 5점                |
|                            |                    | 준법일기                     | ☞ 게시글 작성<br>※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br>(게시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 5점                |
|                            |                    |                          | ☞ 우수 준법일기로 채택                                        | 20점               |
|                            |                    |                          | ☞ 댓글 작성<br>※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br>(댓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 3점                |
|                            |                    | 자기소개<br>게시판              | ☞ 게시글 작성<br>※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 10점               |
|                            | 즐거운<br>토론마당        | 주제토론마당                   | ☞ 음성 파일 제출<br>※회별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 15점               |
|                            |                    |                          | ☞ 우수 의견 채택                                           | 30점               |
|                            |                    |                          | ☞ 댓글 작성<br>※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 5점                |
|                            |                    | 법제토론마당                   | ☞ 법안 제출 시<br>※회별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 15점               |
|                            |                    |                          | ☞ 법안 채택 시                                            | 30점               |
|                            |                    |                          | ☞ 댓글 작성<br>※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br>(댓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 5점                |
|                            |                    | 자유토론마당                   | ☞ 게시글 작성<br>※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br>(게시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 5점                |
|                            |                    |                          | ☞ 댓글 작성<br>※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br>(댓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 3점                |
|                            | 온라인<br>법제교육        | 온라인<br>교육과정              | ☞ 온라인 교육 과정 이수<br>※총 5개 과정<br>- 5개 과정 전부 이수 시 100점   | 20점<br>(1/5 이수 시)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최근 5년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은 전체 선발인원 984명 중 57.4%(565명)가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61.5%(651명), 2022년 61.5%(782명), 2023년 60.1%(782명)를 기록하여 약 60% 내외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는바, 어린이법제관 활동별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비추어 수료기준(1년 활동 합산 마일리지 총점이 50점 이상)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낮은 수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최근 5년간 어린이법제관 수료 현황 】

(단위: 명, %)

| 연도    | 신청자 수 | 선발자 수 | 수료자      |          |
|-------|-------|-------|----------|----------|
|       |       |       | 수료자 수    | 수료율      |
| 2020년 | 984   | 984   | 565      | 57.4     |
| 2021년 | 1,057 | 1,057 | 651      | 61.5     |
| 2022년 | 1,239 | 1,211 | 745      | 61.5     |
| 2023년 | 1,963 | 1,300 | 782      | 60.1     |
| 2024년 | 1,591 | 1,300 | - (진행중)* | - (진행중)* |

자료: 법제처

\*2024년 선발된 어린이법제관은 2025. 2. 28. 수료 예정임.

- 이러한 어린이법제관의 신청 및 선발 인원 현황, 수료율 등에 비추어 법제처는 사업 홍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던 홍보예산(1,353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삭감하였음.

【 어린이법제관 사업 홍보 관련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비교 】

| 2024년 예산      |                                                                                                                                                                                                                                                                                                                                                                                                                                                                                                                                      | 2025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371,939<br>천원 | ○ 일반수용비(210-01) : 89,341천원<br>가.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발송 등 (13,531천원)<br>· 1,150원x11,766장=13,531천원<br>나.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br>· 5천원x1,650부=8,250천원<br>다. 수료증 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br>· 5천원x900부=4,500천원<br>라.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br>· 30천원x290인=8,700천원<br>마.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br>· 15천원x1,500인=22,500천원<br>바.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br>· 810천원x22회=17,820천원<br>사.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br>료 (1,800천원)<br>·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br>아.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br>· 450천원x27회=12,150천원<br>자. 조정계수 (90천원)<br>· 90천원 | 352,619<br>천원 | ○ 일반수용비(210-01) : 75,810천원<br>가.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br>· 5천원x1,650부=8,250천원<br>나. 수료증 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br>· 5천원x900부=4,500천원<br>다.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br>· 30천원x290인=8,700천원<br>라.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br>· 15천원x1,500인=22,500천원<br>마.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br>· 810천원x22회=17,820천원<br>바.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br>료 (1,800천원)<br>·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br>사.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br>· 450천원x27회=12,150천원<br>아. 조정계수 (90천원)<br>· 90천원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홍보 비용 등 삭감이 이루어졌으나, 어린이법제관 모집 시 학교 알림장 앱, SNS, 홈페이지, 카페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홍보 방안 마련 없이 온라인 홍보 및 기관 협조 공문만으로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청 및

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내 독서대회 운영 관련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법 관련 도서의 감상문을 모집·시상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법 지식 향상 및 사고력 배양을 위해 독서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25년도 예산안에는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산출 내역 - 독서대회 운영 비용 】

| 어린이·청소년<br>법제관예산 | 세부 산출내역                                                                                                                                                                                                                                                                                                                                                                                                                                                                   |
|------------------|---------------------------------------------------------------------------------------------------------------------------------------------------------------------------------------------------------------------------------------------------------------------------------------------------------------------------------------------------------------------------------------------------------------------------------------------------------------------------|
| 352,619천원        | ○ 일반수용비(210-01) : 75,810천원<br>가.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br>· 5천원x1,650부=8,250천원<br>나. 수료증·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br>· 5천원x900부=4,500천원<br>다.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br>· 30천원x290인=8,700천원<br><b>라.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b><br>· 15천원x1,500인=22,500천원<br>마.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br>· 810천원x22회=17,820천원<br>바.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료 (1,800천원)<br>·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br>사.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br>· 450천원x27회=12,150천원<br>아. 조정계수 (90천원)<br>· 90천원 |

자료: 법제처

- 독서대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 관련 도서를 배포하고, 감상문을 모집·접수한 후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발표하고, 상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sup>12)</sup>.

## 【 2023년도 및 2024년도 독서대회 운영 현황 】

| 구분     |        | 대상 도서                       | 대상 인원       | 감상문<br>제출 인원 |
|--------|--------|-----------------------------|-------------|--------------|
| 2023년도 | 어린이법제관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지은이: 신주영) | 885명        | 223명(25%)    |
|        | 청소년법제관 | 헌법 다시 읽기(지은이: 양지열)          | 370명        | 96명(26%)     |
| 2024년도 | 어린이법제관 | 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지은이: 예영)   | (진행 중으로 미정) |              |
|        | 청소년법제관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지은이: 양지열) |             |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법제처는 독서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된 사람 중 일정 마일리지 점수(30점)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도서를 배포하고, 감상문 제출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바, 그로 인해 2023년 기준 감상문 제출 인원은 대상 인원 대비 약 25%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sup>12)</sup>.
- 또한, 법제처는 현재 독서대회 도서 선정에 있어 대상별(어린이 법제관, 청소년법제관)로 각 1권의 도서만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참가자의 선택적 수요 반영이 어렵고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법 지식 향상 및 사고력 배양

12) 독서대회 운영 방식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대상 법 관련 도서 배포 → 감상문 모집·접수 → 1차 심사(10배수, 어린이·청소년 각 30편 선정) → 2차 심사(어린이·청소년 각 상위 3편 선정) → 우수작품 발표 및 상품(문화상품권 10만원, 2023년 기준 3명에게 제공) 수여

13)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24년도 독서대회는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를 별도로 모집(어린이 507명, 청소년 310명)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감상문 제출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임.

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서대회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의 별도 모집과 더불어 참가 이후 감상문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우수작품 시상자 수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서대회 참가 대상 도서를 폭넓게 지정하여 도서 선정에 있어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는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법제 지원)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요약·번역하여 국가별·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함.
  - (남북법제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함.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7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4%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 2025년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예산<br>(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A) | (B-A)/A |
|-----------|-------------|-----------------|-----------------|---------|---------|
|           |             |                 |                 |         |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1,085       | 1,662           | 1,702           | 40      | 2.4     |
| 세계법제 지원   | 955         | 1,553           | 1,591           | 38      | 2.4     |
| 남북법제 연구   | 130         | 109             | 111             | 2       | 1.8     |

자료: 법제처

## 나.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세계법제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은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국제분쟁 발생 등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각 부처와 협업하여 외국인 지원, 국제분쟁 등에 활용되는 국내법령 번역본에 대한 연구·정비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 2025년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 예산안 및 세부 산출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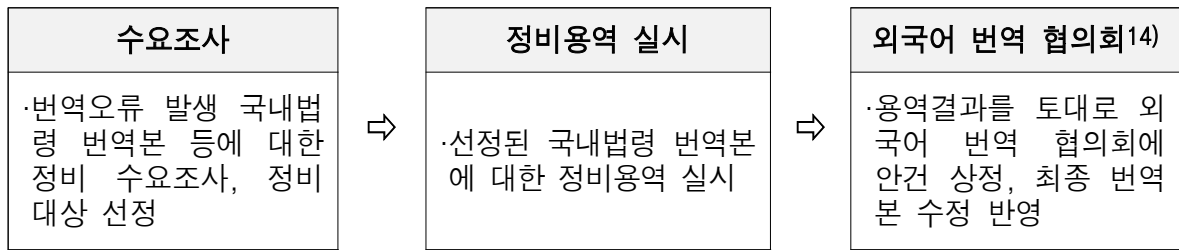
| '25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1,591,155<br>천원 |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br>가.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50,000천원)<br>· 50,000천원×1과제=50,000천원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동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향후 각 부처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법률 및 해당 전문 분야별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법령 소관 부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외국어 법령 번역본의 오류 등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임.

## 【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사업의 추진 방식(안) 】



자료: 법제처

- 현행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조에 따르면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sup>15)</sup>, 실제 개별 부처의 수요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국내법령을 번역하거나 한국법제연구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제공하여 외국어 번역을 실시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번역 결과물을 취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등 총괄 업무를 수행<sup>16)</sup>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 결과물을 번역 기준에 따라

14)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조(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를 반영한 번역 계획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이 번역한 결과물의 공유·감수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제6조(법령의 외국어 번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외국어 번역 계획을 고려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신속하게 외국어 번역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수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번역된 국내법령 중 정비용역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 그런데 현재 한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는 개별 부처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가 그 수요를 취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 번역을 의뢰함으로써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번역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번역 산출물에 대한 감수를 통한 고도화 및 적정성 관리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16)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제3조(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등 국민이나 외국인의 법령에 대한 번역 수요를 파악하기 쉬운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번역 추진 필요성 등을 사유로 번역 계획에서 소관 법령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에게 매년 3월 초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긴급한 번역 수요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 실시 현황 】

(단위: 건)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8월 현재) |
|---------|-------|-------|--------------|
| 한국법제연구원 | 175   | 180   | 124          |
| 중앙행정기관  | 5     | 4     | 3            |

자료: 법제처

- 또한, 번역본 감수를 정부 부처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과 번역 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법제처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제처는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향후 계속 사업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계획인바, 동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하여 2024년 법무부에서 국제중재 관련 분쟁에서 「중재법」, 「국제사법」에 대한 번역 오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번역본 감수를 위해 용역을 추진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sup>17)</sup>

그러나 2024년 9월 말 현재 2025년에 어떤 법령에 대하여 감수를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바, 세부 추진 계획을 적시에 수립할 필요가 있고, 번역본 감수에 대한 수요가 단발성 수요인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17) 법제처는 외부 법무법인과 용역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3,000만원의 예산(기관운영기본경비-일반용역비)을 집행하였다고 밝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제처는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는 정부기관별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나열된 법령정보를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는 사업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400만원(2.6%)이 증액되었음.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운영의 종료로 일반수용비 72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위탁사업비가 12억 5,3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 2025년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 사 업 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찾기 쉬운<br>생활법령정보서비스 | 1,022       | 1,328       | 1,362           | 34          | 2.6     |
| 상용임금               | 28          | 29          | 30              | 1           | 3.4     |
| 일반수용비              | 16          | 17          | 10              | -7          | -41.2   |
| 공공요금 및 제세          | 4           | 5           | -               | -5          | -100    |
| 특근매식비              | 4           | -           | -               | -           | -       |
| 임차료                | 5           | 6           | 6               | 0           | -       |
| 복리후생비              | 1           | 1           | 1               | 0           | -       |
| 국내여비               | 1           | 1           | 1               | 0           | -       |
| 사업추진비              | 10          | 10          | 10              | 0           | -       |
| 민간위탁사업비            | 948         | 1,253       | 1,298           | 45          | 3.6     |
| 고용부담금              | 5           | 6           | 6               | 0           | -       |

자료: 법제처

## 나. 외국어 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은 생활법령콘텐츠 개발 및 생활법령 시스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는 법령 및 조례 등 국문콘텐츠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12개 국가 외국어 번역콘텐츠를 제공 중임.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국문/외국어 사이트 】

|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
|-----|----------------|
| 국문  |                |
| 외국어 |                |

□ 2025년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는 12억 9,800만원으로 홍보비용 4,200만원을 제외한 12억 5,600만원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비용에 해당함.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조례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면서 7명의 별도 인원을 운용하였으나 2025년의 경우 국문콘텐츠와 조례콘텐츠를 통합하여 25명의 인원이 국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고<sup>18)</sup>, 기존 12개 외국어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와 번역 및 감수 예산에 더하여 신규로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예산 편성 내역 】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53,411천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98,411천원                                                                                                                                                                                                                                                                                                                         |
| 1. 국문 콘텐츠 개발 용역 : 721,482천원<br>· (2,335,800원*18명*12월)*1.3*1.1=721,482천원                                                  | 1.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경비 : 1,256,023천원<br>가. 국문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1,002,058천원<br>· 2,335,800원*25명*12월*1.3*1.1= 1,002,058천원<br>나. 외국어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69,965천원<br>· 2,038,600원*2명*12월*1.3*1.1= 69,965천원<br>다. 외국어콘텐츠 번역 및 감수= 140,000천원<br>· 5,000,000원*28개= 140,000천원<br><b>라.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 44,000천원</b><br><b>· 1,000,000원*4개 언어*10건*1.1= 44,000천원</b> |
| 2. 조례 콘텐츠 개발 용역: 280,576천원<br>· (2,335,800원*7명*12월)*1.3*1.1=280,576천원                                                    | 2. 생활법령정보 홍보 : 42,184원<br>가. 온라인홍보= 31,020천원<br>· 1,880,000원*15회*1.1= 31,020천원<br>나. 오프라인홍보(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 11,164천원<br>· 3,383,000원*3회*1.1= 11,164천원                                                                                                                                                                                                    |
| 3. 외국어 콘텐츠 개발 용역: 69,965천원<br>· (2,038,600원*2명*12월)*1.3*1.1=69,965천원                                                     | 3. 조정계수: △204천원                                                                                                                                                                                                                                                                                                                                         |
| 4.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용역 : 140,000천원<br>· 5,000,000원*28개=140,000천원                                                        |                                                                                                                                                                                                                                                                                                                                                         |
| 5. 생활법령정보 홍보 : 42,184천원<br>· 온라인 홍보 : 1,880,000원*15회*1.1=31,020천원<br>· 오프라인 홍보(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 3,383,000원*3회*1.1=11,164천원 |                                                                                                                                                                                                                                                                                                                                                         |
| 6. 조정계수: △796천원                                                                                                          |                                                                                                                                                                                                                                                                                                                                                         |

18) 민간위탁사업자인 한국법령정보원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 고용현황

|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 | 소계 |
|-----|-----|-------|-----|----|
| 국문  | 8   | 5     | 5   | 18 |
| 조례  | 2   | -     | 5   | 7  |
| 외국어 | -   | 1     | 1   | 2  |

- 법제처는 기존 외국어콘텐츠 개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알기쉬운 외국어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유에 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그림·영상 등으로 ‘시각화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구체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활용성이 높은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에 대해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노동·복지·사회안전·K창업 및 투자 관련 분야의 신규 콘텐츠를 집중·개발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현재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외국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상 제공 중인 책자형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콘텐츠와의 내용 중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법제처는 현재 추가적인 예산 없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책자형 콘텐츠 일부를 시각적인 카드뉴스형 외국어콘텐츠의 내용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 예시 콘텐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인하여 책자형과 차별화되어 이해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일례로,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실제 외국운전면허로 국내 주행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외국인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자세한 내용은 책자형 콘텐츠를 참고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 등 시범사업의 결과물만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알기쉬운 외국어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카드뉴스형 외국어 콘텐츠 】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                                                                                                                                                                                                                                                                                                                                                                                                                                                               |
|---------------------------------------------------------------------------------------------------------------------------------------------------------------------------------------------------------------------------------------------------------------------------------------------------|---------------------------------------------------------------------------------------------------------------------------------------------------------------------------------------------------------------------------------------------------------------------------------------------------------------------------------------------------------------------------------------------------------------------------------------------------------------|
|  <p>Can I drive in Korea with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issued in a foreign country?</p>                                                                                                                |  <p><b>Yes, you can!</b></p> <p>Any person with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issued by a country (US, Canada, Japan, France, etc.) that joined the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and the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may drive a vehicle in Korea of the same licensed class for up to 1 year from the date the license holder entered Korea.</p> |
| <p>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p> <p>If you are the cause of a traffic accident while driving in Korea, you may be prohibited from driving in Korea even with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p>  |  <p>For detailed legal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Driver's License」 in <a href="http://easylaw.go.kr">easylaw.go.kr</a></p>                                                                                                                                                                                                                                       |

## 【 (참고) 시범사업 해당 부분의 기존 책자형 외국어 콘텐츠 】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
|---------------------------------------------------------------------------------------------------------------------------------------------------------------------------------------------------------------------------------------------------------------------------------------------------------------------------------------------------------------------------------------------------------------------------------------------------------------------------------------------------------------------------------------------------------------------------------------------------------------------------------------------------------------------------------------------------------------------------------------------------------------------------------------------------------------------------------------------------------------------------------------------------------------------------------------------------------------------------------------------------------------------------------------------------------------------------------------------------------------------------------------------------------------------------------------------------------------------------------------------------------------------------------------------------------------------------------------------------------------------------------------------------------------------------------------------------------------------------------------------------------------------------------------------------------------------------------------------------------------------------------------------------------------------------------------------------------------------------------------------------------------------------------------------------------------------------------------------------------------------------------------------------------------------------------------------------------------------------------------------------------------------------------------------------------------------------------------------------------------------------------------------------------------------------------------------------------------------------------------------------------------------------------------------------------------------------------------------------------------------------------------------------------------------------------------------------------------------------------------------------------------------------------------------------------------------------------------------------------------------------------------------------------------------------------------------------------|
| <p><b>Driving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untries That Issue International Driver's Permits You Can Use to Drive in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issued overseas by an authority that is a party to the following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can use sai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to drive in Korea for 1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Article 96-(1) of the Road Traffic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li> <li>✓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li> <li>✓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o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recognized by Korea and a foreign country</li> </ul> </li> </ul> </li> <li>■ Types of Vehicles You Can Drive with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can drive the types of vehicles specified on his or her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Article 96 (1) of the Road Traffic Act)</li> <li>-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cannot drive commercial vehicles defined by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6 (2) of the Road Traffic Act)</li> <li>-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can drive vehicles r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96 (2) of the Road Traffic Act)</li> </ul> </li> </ul> <p><b>Restrictions on Driving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ample of Restrictions on Driving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 individual driving in Korea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may be prohibited from driving with the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by the commissioner of a district police agency for up to one year. (Article 97 (1) of the Road Traffic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 the aptitude test is missed or failed.</li> <li>✓ If the individual i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regardless of who is at fault.</li> <li>✓ If the individual is a Korean national with a canceled or suspended driver's license who is still in the disqualification period.</li> <li>✓ If the individual has violated a law, order, or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motor vehicle</li> </ul> </li> </ul> </li> </ul> |

- 따라서 별도의 “알기쉬운 외국어콘텐츠 개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책자형 외국어콘텐츠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거나 삽화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외국어 법령정보 제공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법제정비(1032-301)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정비 사업(1032-301)은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규제 정비 등 법제적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법령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함.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10.6%)이 감소된 11억 8,400만원임.

### 【 2025년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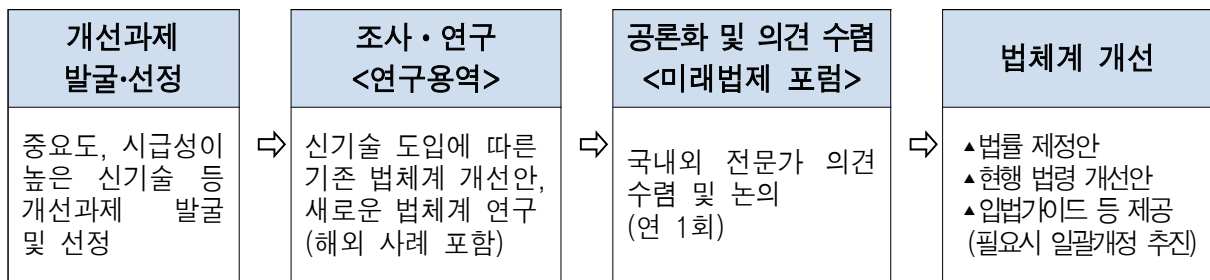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법제정비           | 1,211       | 1,324          | 1,184           | △140        | △10.6   |
| 법령정비           | 315         | 494            | 467             | △27         | △5.5    |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 329         | 311            | 274             | △37         | △11.9   |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567         | 519            | 443             | △76         | △14.6   |

자료: 법제처

## 나. 미래법제 사업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 법제처는 선제적으로 신기술 법제를 마련하고 현행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법제 혁신 사업”(이하 “미래법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 전년과 동일하게 정책연구비(260-02목) 7,500만원과 설명회·공청회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 7,5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 미래법제 사업 추진 프로세스 및 예산 산출내역 】



자료: 법제처

- 2024년 법제처는 미래신기술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 과제를 조사·연구하고 법체계 개선 및 필요시 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는 사업 계획에 따라 ①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② “자격·면허 업무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

2025년 법제처는 2024년 발굴한 정비과제의 법제지원을 추진<sup>19)</sup>하고, 산업용 로봇 활용, 우주항공 분야 산업 활성화 관련 법제지원 방안 등 법제 연구<sup>20)</sup>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함.

【 2024년 미래법제 사업 법령정비 및 법제지원 추진내역 】

| 구 분              | 주요내용                                                                      | 추진현황                                                      |
|------------------|---------------------------------------------------------------------------|-----------------------------------------------------------|
| 행정 디지털화 촉진       | 행정 디지털화 촉진 및 국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         | 보관·대조 유형 정비(28개 법령) 추진<br>제출·반납 유형 정비안 입법절차 진행 중          |
| 인공지능 활용 법적 기반 마련 |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격·면허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등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입법모델 마련 | 연구용역 진행(~11. 2.), 미래법제 포럼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모델 마련 및 법제지원 등 추진 |

【 2024년 미래법제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 내역 】

| 주 제                             | 수행기관    | 계약기간      | 계약방식 | 계약금액    |
|---------------------------------|---------|-----------|------|---------|
| 자격·면허업무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3.6~11.2. | 제한경쟁 | 6,800만원 |

□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선도기술을 신속히 도입·확산시키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일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해당

19) 법제처는 자격·면허 업무영역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인력요건 대체를 위한 개별법령 정비 지원 / 전자화 등을 통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감축 법령정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설명함.

20) \* (연구과제안) ▲인허가·등록 요건에 있어서의 물적 기준의 산업용 로봇 활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우주항공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스마트농업 등의 도입을 통한 농어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등

분야의 소관 부처가 아닌 법제처에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2024년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격·면허 업무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는 자격·면허의 성격, 기득권 인정 정도, 경쟁 상황 등에 따라 규제 법제 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제처에서 포괄적 연구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기술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는 해당 산업의 구조, 기존 규제와의 관계 등 소관 부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인공지능의 경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가 출범<sup>21)</sup>하여 운영되고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올해 미래법제본부<sup>22)</sup> 내 AI법제팀이 신설되어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음.

### 【 2024년 한국법제연구원 AI 관련 보고서 발간 내역 】

| 일 자          | 보고서 주제                                  |
|--------------|-----------------------------------------|
| 2024. 8. 12. |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입법적 시사점           |
| 2024. 8. 9.  | 행정작용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통제                      |
| 2024. 8. 8.  |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의 한계              |
| 2024. 6. 14. | 인공지능 거버넌스 - EU, 영국, 미국의 거버넌스 분석         |
| 2024. 6. 11.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특성과 쟁점-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시사 |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1)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됨.

22) 한국법제원의 미래법제본부는 AI법제팀, 기후변화법제팀, 글로벌법제전략팀, 통일법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됨.

□ 또한, 법제처는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미래법제 포럼” 행사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그런데 법제처는 예산 편성 당시와 다르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임.

### 【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미래법제 포럼 개최 예산 산출내역 】

| 미래법제 포럼 개최 예산 산출내역                  |  |
|-------------------------------------|--|
| ■ 미래법제 포럼(일반용역비) 75백만원 = 1회 X 75백만원 |  |
| － 행사 운영인력 운용(통번역 등 포함) 30백만원만원      |  |
| － 행사장소 및 장비(온라인 송출) 임차 22백만원        |  |
| － 국내외 전문가 초청비 및 수당 15백만원            |  |
| － 자료집 등 인쇄, 관련 콘텐츠 제작 등 8백만원        |  |

자료: 법제처

### 【 2024년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계획(안) 】

| 미래법제 포럼 행사 개요                                                            |             |      |                                   |
|--------------------------------------------------------------------------|-------------|------|-----------------------------------|
| ○ (목적) 미래기술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선제적인 입법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제 동향과 개선방안을 논의 |             |      |                                   |
| ○ (주제) 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                                                    |             |      |                                   |
| ○ (주최)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             |      |                                   |
| ○ (일시/장소) '24. 11. 12.(화), 13:30 / 웨스틴 조선(서울 중구)                         |             |      |                                   |
| 구분                                                                       | 시 간         |      | 내 용                               |
| 개회식                                                                      | 13:20~13:30 | 10분  | ■ VIP 환담                          |
|                                                                          | 13:30~14:20 | 50분  | ■ 개회식(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등) |
| 세션1                                                                      | 14:20~17:00 | 160분 | ■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국내·외 동향)       |
| 세션2                                                                      | 17:00~18:15 | 75분  | ■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              |

자료: 법제처

- 공동주최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포럼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 미비 및 불합리한 법령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라는 포괄적인 주제와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행사 경비 역시 2024년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7,500만원을 넘어 총 1억원(법제처가 약 7,300만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약 3천만원 분담)<sup>23)</sup>이 될 예정임.

-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에 따라 유사 행사의 중복 개최 가능성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나, 통합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개별법의 구체적인 정비안을 도출하려고 했던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양 기관의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앞서 언급한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역시 EU의 AI 법을 개관하고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이미 올해 4월 개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23) <출처: 법제처> ○ 국제포럼 행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으로 대행사를 선정해 진행 중으로,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분담하는 비용(해외연사 항공권, 발표자료집 제작, 국내외 강사료)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분담.  
- 본 행사는 총액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항목별 실제 집행내역은 행사 종료 및 정산 시 조정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분담 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법제처에서 세부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 시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2024년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 회의 내용 】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요                                                                                                                                                                                                                                                                                                          |
|-------------------------------------------------------------------------------------------------------------------------------------------------------------------------------------------------------------------------------------------------------------------------------------------------------------------------------------|
| <p>○ 일 시: 2024년 04월 16일,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p> <p>- 주요내용 : EU AI법 주요내용 및 국내 AI법제 발전방향 논의</p> <p>-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p>                                                                                                                                                                                         |
| <p>- 발제 및 종합토론</p> <p>(1)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 000 변호사(분과장, 법무법인 00)</p> <p>(2) [기조발제]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 / 000 교수(연세대학교)</p> <p>(3) [발제1] 금지되는 AI 관행 / 000 변호사(000 법률사무소)</p> <p>(4) [발제2] 고위험 AI 대상과 의무 / 0000 교수(한양대학교)</p> <p>(5) [발제3]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 / 000 변호사(법무법인 000)</p> <p>(6) [종합토론]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 논의</p> |

자료: 법제처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제처는 2024년 포럼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동 행사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완·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 6.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사업은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을 전자적으로 구축·유지·관리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등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그 밖에 법제처 정보화 관련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80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인 6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 2025년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예산<br>본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A) | (B-A)/A |
|------------------------|-------------|--------------------|-----------------|---------|---------|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 8,687       | 8,744              | 8,046           | △698    | △8      |
| 국가법령정보 통합<br>구축 및 서비스  | 5,558       | 5,082              | 4,632           | △450    | △9      |
| 정부입법 지원사업              | 1,603       | 2,166              | 1,618           | △540    | △25     |
| 찾기 쉬운 생활법령<br>정보서비스    | 487         | 333                | 433             | 100     | 30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83          | 118                | 99              | △19     | △16     |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 387         | 435                | 459             | 24      | 6       |
| PC등 전산장비 및 정<br>보보안 관리 | 326         | 373                | 526             | 153     | 41      |
|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 -           | -                  | 40              | 40      | 100     |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 243         | 237                | 239             | 2       | 0.8     |

자료: 법제처

## 나. 정보취약계층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내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AI)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①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②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③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④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⑤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⑥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46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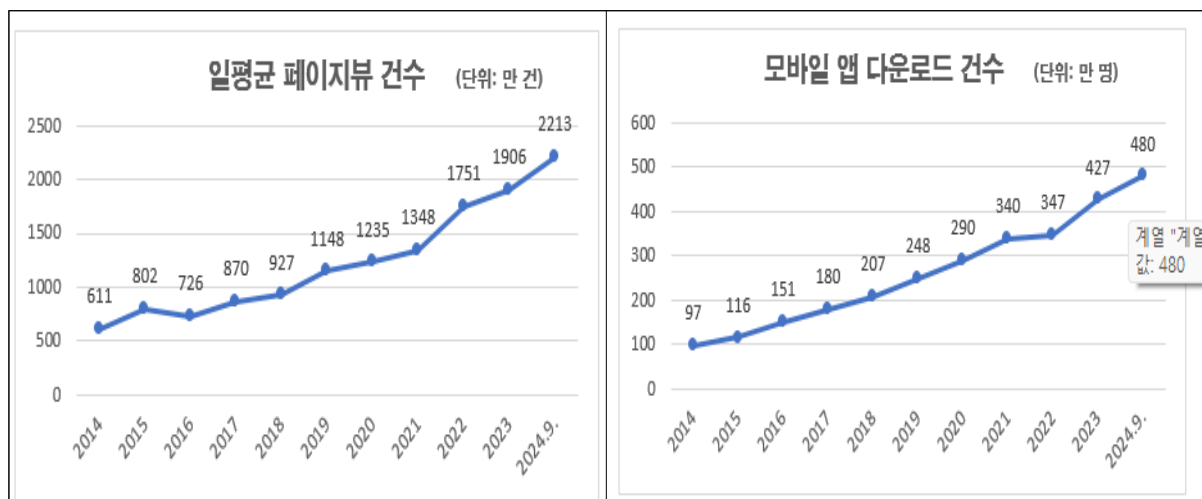
### 【 2025년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 주요 내용                                                                                                      | 2025년 예산(안) |
|--------------------|-----------------------------|------------------------------------------------------------------------------------------------------------|-------------|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용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데이터 및 라이선스 구매                                                     | 5           |
|                    |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 「점자법」 제12조의2에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일 내용의 점자분서 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의 본문 및 첨부파일을 전자점자문서 형태로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 178         |
|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을 통해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로의 전환 기반 마련           | 513         |
|                    |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 관보에 공포되는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법령정보간 연계정보 현행화 등을 관리                                                                  | 2,044       |
|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 1,704       |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       | 국내외 법제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마련                         | 188         |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국민이 원하는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 법령검색시스템 이용자 현황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일반 국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률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편은 미흡한 상황이며, 2025년 예산안 중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법령정보 전자점자 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1억 7,800만원)’이 유일함.
-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 및 민원)를 통해 시스템 활용에 있어 불편 요소 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민신문고의 주요 내용 】

| 일자            | 주요 내용          |                                                                         |
|---------------|----------------|-------------------------------------------------------------------------|
| 2023. 5. 22   | 시각장애인<br>불편 요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등을 찾아볼 때 음성인식이 불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불편 초래                         |
| 2023. 8. 25.  |                |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서비스 지원 필요                             |
| 2022. 5. 10.  | 고령층 등<br>불편 요소 | 법령 본문의 가독성이 좋지 않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폰트 등 화면 개편 필요                             |
| 2022. 6. 30.  |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법령정보에 대한 편집 정비 등을 통해 법령 본문의 가독성을 높일 필요             |
| 2022. 11. 14.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내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기능을 한눈에 파악하기 불편함                             |
| 2023. 5. 2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PC)을 스마트폰에서 볼 때 불편하므로, 스마트폰 기기에 맞추어 화면이 조정되는 반응형 웹으로의 개편이 필요 |

자료: 법제처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sup>24)</sup>,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서는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5)</sup>.

24)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통신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국민제안 및 민원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26)</sup>).

- 우선,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해야만 법령조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령 검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 【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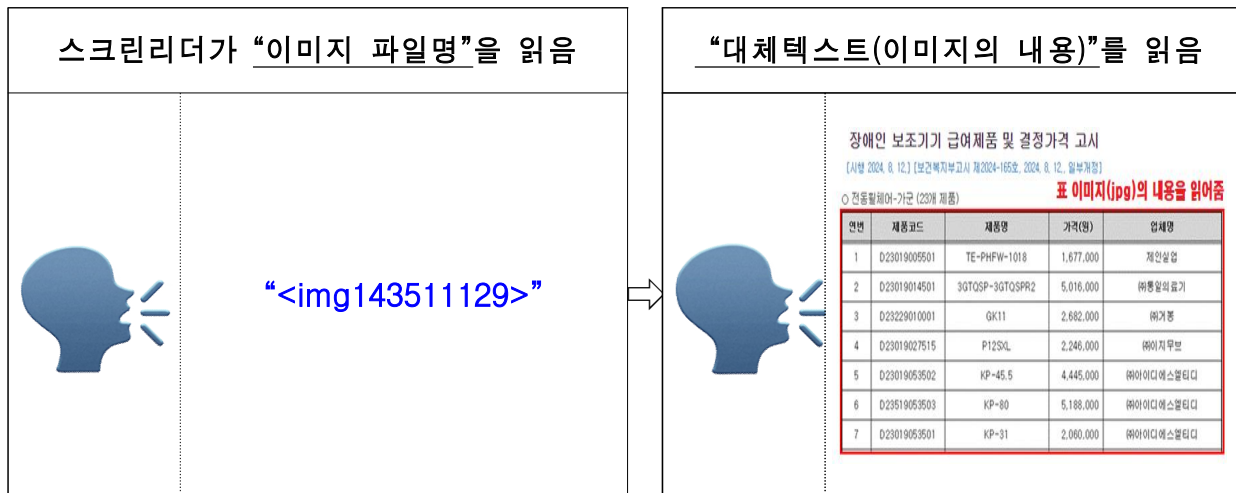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26)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정보취약계층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하여 총 7억 6,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②현재는 법령정보 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스크린리더로 읽는 경우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대체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으나, 법령 정보 상의 이미지를 확인하여 대체텍스트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법령정보 내 이미지 정보를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있도록 개편 】



## 【 고령층을 위한 반응형 웹 개발 】



자료: 법제처

② 현재는 법령정보 검색에 있어 주요 기능을 인지함에 있어 불편 요소가 있는 만큼 직관적으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 】

**지나치게 많은 버튼 및 복잡한 화면 구성으로 인해 대국민 고충 유발**

① **현행법령·연혁법령 등 주요 소메뉴 인지 불편**

② **별표서식, 신규법비교 등 주요 기능 인지 불편**

③ **상세검색 기능 인지 불편**

고령자의 경우 작고 뾰족한 체크박스 버튼을 확인하기 어려움

자료: 법제처

## 다.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중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법제업무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법제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8,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 2025년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188백만원)                                                                                            |             |            |                |            |             |     |                    |
|----------------------------------------------------------------------------------------------------------------------------|-------------|------------|----------------|------------|-------------|-----|--------------------|
| - (요구) 법제업무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해 국내외 법제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마련, '24년 대비 신규 소요 |             |            |                |            |             |     |                    |
| - (산출)                                                                                                                     |             |            |                |            |             |     |                    |
| 업무                                                                                                                         |             | 업무별<br>가중치 | 해당여부<br>(O, X) | 총업무<br>가중치 | 업무 요소       | 난이도 | 해당<br>여부<br>(O, X) |
| 환경<br>분석                                                                                                                   | 경영환경 분석     | 3.5        | X              | 32.2       | 업무규모 (단순)   | 0.7 | O                  |
|                                                                                                                            | 정보기술 환경분석   | 3.7        | X              |            | 업무규모 (보통)   | 1.0 | X                  |
|                                                                                                                            | 제도/규정 분석    | 2.0        | O              |            | 업무규모 (복잡)   | 1.3 | X                  |
| 현<br>황<br>분<br>석                                                                                                           | 경영전략 분석     | 2.8        | X              |            | 업무의특성 (단순)  | 0.6 | X                  |
|                                                                                                                            | 업무분석        | 6.1        | O              |            | 업무의특성 (보통)  | 1.0 | O                  |
|                                                                                                                            | 정보시스템 분석    | 6.1        | X              |            | 업무의특성 (복잡)  | 1.4 | X                  |
|                                                                                                                            | 벤치마킹        | 2.5        | O              |            | 기존시스템 (단순)  | 0.7 | O                  |
|                                                                                                                            | 차이분석        | 2.0        | O              |            | 기존시스템 (보통)  | 1.0 | X                  |
| 목<br>표<br>모<br>델<br>수                                                                                                      | 업무프로세스 설계   | 6.3        | X              |            | 기존시스템 (복잡)  | 1.3 | X                  |
|                                                                                                                            | 정보화 전략 수립   | 3.3        | O              |            | ISP 유형 (보통) | 1.0 | O                  |
|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5.0        | O              |            | ISP 유형 (복잡) | 1.4 | X                  |
|                                                                                                                            | 정보관리 체계수립   | 3.8        | O              |            | 정보자원규모 (단순) | 0.6 | X                  |
|                                                                                                                            |             |            |                |            |             |     | 0.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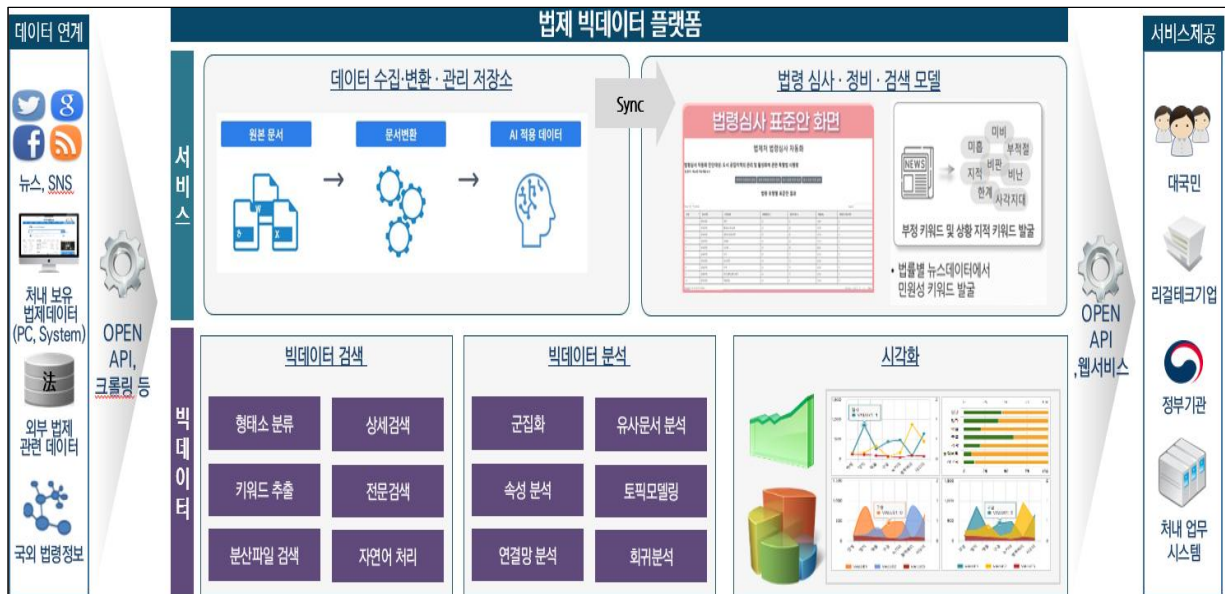
|                            |                   |     |   |  |             |            |   |  |
|----------------------------|-------------------|-----|---|--|-------------|------------|---|--|
| 립                          |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 2.5 | X |  | 정보자원규모 (보통) | 1.0        | O |  |
| 이<br>행<br>계<br>획<br>수<br>립 | 업무프로세스<br>개선계획 수립 | 3.5 | X |  | 정보자원규모 (복잡) | 1.4        | X |  |
|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br>수립  | 3.8 | X |  | BPR수행 (보통)  | 1.0        | X |  |
| 세<br>부<br>계<br>획<br>작<br>성 | 소요예산 산출           | 3.5 | O |  | BPR수행 (복잡)  | 1.3        | X |  |
|                            | 기대효과 산정           | 2.5 | X |  |             |            |   |  |
|                            | 제안요청서 작성          | 4.0 | O |  |             |            |   |  |
| 컨설팅업무량 계산 (가중치 x 난이도)      |                   |     |   |  |             | 15.778     |   |  |
| ISP 단가(2024년)              |                   |     |   |  |             | 10,835,831 |   |  |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별도)        |                   |     |   |  |             | 170,967천원  |   |  |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포함)        |                   |     |   |  |             | 188,065천원  |   |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분석·활용하여 민간 및 정부기관 등에 공유·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①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국회 심사보고서, 발의 법률안, 법원·헌재 판례평석), ②해외 법제 데이터(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또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을 통한 외국의 원본 법령 정보 수집), ③뉴스, SNS 데이터(국민이 불편·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정보 수요 의견 데이터 등) 등을 수집·분석하여 플랫폼을 구축 하겠다는 계획임.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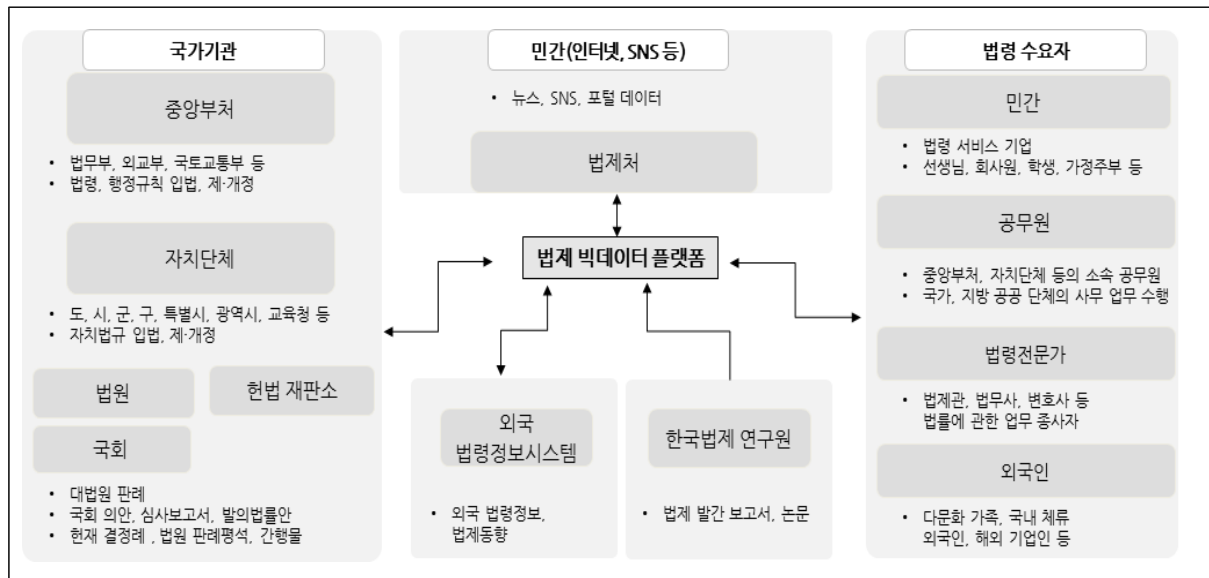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수집·분석 데이터

- 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 국회 심사보고서, 발의법률안, 법원·헌재 판례 평석
- 해외 법제 데이터: 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또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ODA 사업을 통한 수원국의 원본 법령정보 수집(예시: 베트남, 인니 법령 등)
- 뉴스, SNS 데이터: 국민이 불편·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정비 수요 의견 데이터 등

자료: 법제처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제공 흐름도 】



자료: 법제처

- 또한, 향후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플랫폼을 이용하여 ①데이터 기반 법령심사를 수행하고, ②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공정·불합리한 법조문 발굴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며, ③국민, 기업 및 정부부처에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법제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검색·공유·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임.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방안 】

| 활용 방안 | 주요 내용                                                                                                 |
|-------|-------------------------------------------------------------------------------------------------------|
| 법령심사  | 법령입안·심사기준 반영과 법령심사 의뢰안과 심사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①반복적 오류 탐지, ②표준안 비교, ③참고 법령 및 조문 조회 기능 제공을 통해 데이터 기반 법령심사 추진 |
| 법령정비  | 민원성 뉴스,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수요에 최적화된 법령정비 추진                                    |
| 공동활용  | 플랫폼에서의 공공데이터(국민, 기업), 공동활용데이터(정부부처) 제공을 통한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 및 조회의 신뢰성 확보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sup>27)</sup>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유는 계획수립 단계를 내실화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간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정책 지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27) 조직, 기관,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법제처는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법제처는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목적을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창구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 해외 법제 데이터 및 뉴스, SNS 데이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바, 정보공개의 범위, 개인정보, 저작권 이슈 등을 이유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오류 또는 정확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sup>28)</sup>.
- 예를 들어,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 중 법원·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등은 저작물 사용 동의 등이 필요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뉴스, SNS 데이터의 경우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정보의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8) 오윤경, 차남준,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2024.1. 66면.

□ 다음,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 관련 정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됨을 전제로 하는바, 정보 공유 및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주요 수집·분석 데이터 중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은 국회에,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 그런데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sup>29)</sup>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제8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제10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데이터 제

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의 대상 및 요청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sup>30)</sup>은 법제처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령정보 중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①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②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은 제외되어 있음<sup>31)</sup>.

30)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1) 참고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05호)에서는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법원 판례를 수집·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제처는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적 근거 보완을 검토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7.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제처 내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 (법제교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함.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함.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 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7억 2,600만원(46.7%) 증액된 22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법제교육 운영 관련 임차료 증액, 청년인턴 제도 운영 관련 증액 등임.

## 【 2025년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년<br>결산 | 2024년<br>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r>(B-A) | (B-A)/A |
|------------------------|-------------|----------------|-----------------|-------------|---------|
|                        |             |                |                 |             |         |
| 법제교육 및<br>법제전문인력육성     | 1,412       | 1,555          | 2,281           | 726         | 46.7    |
| 법제교육                   | 1,239       | 1,318          | 2,017           | 699         | 53.0    |
| 행정효율성 증진 및<br>법제전문성 향상 | 173         | 156            | 130             | △26         | 16.7    |
| 청년인턴 제도 운영             | -           | 81             | 134             | 53          | 65.4    |

자료: 법제처

### 나.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계획 변경에 따른 임차료 감액 필요

- 법제처 법제교육은 ① 양재동 법제교육센터, ② 시·도 순회교육, ③ 맞춤형 교육의 3개 유형의 집합교육과 온라인 이러닝 교육으로 분류해볼 수 있음.

그러나 행정법령의 증가, 자치법규의 제·개정 빈도 증가 등으로 법령 입안 및 집행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현재의 법제교육 방식과 내용만으로는 법제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따라 법제처는 5일 이상 장기과정 운영 등 법제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완공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은 11월 개원 예정으로, 법제처는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등 시설을 임차하여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함. 법제처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매주 2~3개 과정을 개설하고 일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안면도 내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오송-태안 및 서울-태안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개원 추진 경과 】

| 추진 경과 및 개원 일정                                                                                                                                                                                                                                                                                                                                                                                                                                                                                                                                                                                                                                                                                                                                       |
|-----------------------------------------------------------------------------------------------------------------------------------------------------------------------------------------------------------------------------------------------------------------------------------------------------------------------------------------------------------------------------------------------------------------------------------------------------------------------------------------------------------------------------------------------------------------------------------------------------------------------------------------------------------------------------------------------------------------------------------------------------|
| <p>&lt;추진경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월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 보고</li> <li>○ '15년 12월 기재부, 교육기관 현황조사 등을 거쳐 세종시 이전 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태안정책연수원 건립 추진(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li> <li>- 법제처는 법제교육원 개원을 목표로 태안정책연수원 입주수요 제출</li> <li>○ '19년 4월 교육수요 재조사 및 공사비 단가 재검토 거쳐 기금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 후 재추진</li> <li>○ '21년 9월 태안정책연수원 공사 발주</li> <li>○ '24년 9월 완공</li> <li>○ '24년 11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개원</li> </ul> <p>&lt;개원 일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원일) 11월 초 예정</li> <li>○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134번지</li> <li>○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시설) 교육동(1~3층), 숙소동[B1~8층, 220명(2인실 18개, 2인실(커넥팅 48개, 4인실 22개) 수용 숙소, 식당, 매점], 대강당(1~2층) 등 3개동 구성</li> <li>* 이 중 법제처는 중강의실 1개, 소강의실 1개, 분임토의실, 회의실 및 강사대기실 사용</li> </ul> |

자료: 법제처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개발·취득되는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 기금 개발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2024년에 이어 2025년 법제교육 운영 관련 강의실 및 사무공간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음.
- 2024년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9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필요한 임차료만 반영하여 강의실 임차료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은 1년간 필요한 강의실 임차료 4억 7,850 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24~2025년 법제교육원 관련 임차료 예산 편성 내역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br>(1034-300) | <b>220,400천원</b><br>(29,000원×7,600명) | <b>478,500천원</b><br>(29,000원×1,650명×10월) |
| 강의실 임차료(210-07목)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br>(1011-250)        | 4,598천원<br>(695,594원×6월×1.1)         | 9,195천원<br>(695,594원×12월×1.1)            |
| 사무공간 임차료(210-07목)              |                                      |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기획재정부는 수요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sup>32)</sup>, 법제처가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32) <출처: 법제처>

위한 경우에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법제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제처간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사용협약 시 무상 사용 방침이 명시적으로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함.

- 동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2024년 임차료 예산은 전액 불용될 예정이며, 2025년 임차료 예산의 경우에도 편성이 필요하지 않아 현재 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인 강의실 임차료 4억 7,850만원 및 사무공간 임차료 920만원 전액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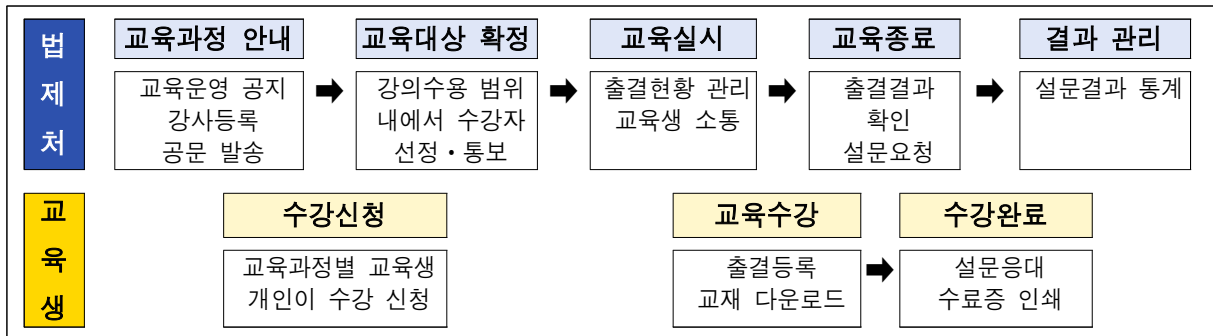
#### 다. 법제교육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법제처는 2023년 2억 5,300만원의 예산<sup>33)</sup>으로 법제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 2월부터 운영 중임. 법제교육시스템(edu.moleg.go.kr)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수강신청, 교육생 선정, 출결 확인 및 수료증 발급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법제교육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9,515명이 회원가입 하였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4,401명이 법제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됨.

---

33) 일반연구비(260-01목)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구축 632,000원×354.7FP= 224,170천원  
자산취득비(430-01목)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지원용 상용SW 도입: 29,000천원

## 【 법제교육시스템 개요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법제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소속기관 및 주소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sup>34)</sup>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법제교육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망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sup>35)</sup> 개인정보는 내부망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

3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 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을 적용해 권한 관리, 암호화 조치 및 접속 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음.

35)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

런데 현재 법제교육시스템은 인터넷망에만 구축되어 개인정보를 인터넷망에 보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부 해킹 또는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임.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교육시스템을 내부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고, 인터넷망 DB에는 법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선별·저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등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망분리 등 법제교육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약 2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산출내역 】

| 내 용               | 관련 비목             | 산출내역          |        |
|-------------------|-------------------|---------------|--------|
| 가. 시스템 내부망/외부망 분리 | 260-01<br>(연구용역비) | 205백만원 × 1식   | 205백만원 |
| 나. (망)복제 솔루션 구입   | 430-01<br>(자산취득비) | 14.67백만원 × 6개 | 88백만원  |

자료: 법제처

---

리·운영하여야 한다.

## 8. 정책연구비 관련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연구용역 관련 비용으로, 학술, 기술, 평가, 정책개발 등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9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7,300만원(△15.1%)이 감액되었음.

### 【 2025년도 법제처 정책연구비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br>결산 | 2024년 예산<br>본예산(A) | 2025년<br>예산안(B) | 증감(B-A) |         |
|-------------------------|-------------|--------------------|-----------------|---------|---------|
|                         |             |                    |                 |         | (B-A)/A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br>(1031-301) | 64          | 40                 | 90              | 50      | 125.0   |
| 법제정비<br>(1032-301)      | 407         | 496                | 371             | △125    | △25.0   |
| 행정법제 혁신<br>(1032-302)   | 566         | 440                | 410             | △30     | △6.8    |
| 외국법제기관교류<br>(1034-301)  | 45          | 100                | 50              | △50     | △50.0   |
| 법제정책연구개발<br>(1035-300)  | 74          | 68                 | 50              | △18     | △26.5   |

자료: 법제처

## 나.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공정성 담보 및 연구수행기관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임.
-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은 10억 3,700만원, 2023년은 12억 2,400만원, 2024년은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에는 법제정비(1032-301) 사업에 4억 9,600만원이 배정되어 가장 많은 비중(43.3%)을 차지하였음.

### 【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및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br>(1031-301) | 28    | 69    | 40    |
| 법령심사지원<br>(1032-300)    | 40    | -     | -     |
| 법제정비<br>(1032-301)      | 501   | 421   | 496   |
| 행정법제 혁신<br>(1032-302)   | 344   | 610   | 440   |
| 외국법제기관교류<br>(1034-301)  | 50    | 50    | 100   |
| 법제정책연구개발<br>(1035-300)  | 74    | 74    | 68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15건 중 11건(73%)을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4건(27%)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고, 2023년은 22건 중 14건(64%)은 수의계약, 8건(36%)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4년은 20건 중 9건(45%)을 수의계약, 11건(55%)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3년간 수행한 총 57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중 수의계약 체결 비중 [총 34건(59.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22년 법제처 수행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주제                                              | 수행자         | 계약기간          | 계약방식 | 계약금액 |
|-----------------------|-------------------------------------------------|-------------|---------------|------|------|
|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1031-301) | 행정·안전, 국토·환경, 교통·운수, 농업·수산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 분석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3.24.~10.31.  | 수의   | 25   |
| 법령심사지원 (1032-300)     | 지정제도의 입법 현황 분석을 통한 심사 기준 및 입법모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5.12.~11.12.  | 수의   | 36   |
| 법제정비 (1032-301)       | 법령상 “협의”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연구                  |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 4.13.~10.12.  | 수의   | 44   |
|                       |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6.1.~9.15.    | 수의   | 90   |
|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해수부)                    | 인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3.8~9.5.      | 제한경쟁 | 59   |
|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행안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3.30~9.26.    | 제한경쟁 | 60   |
|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외교부)                    | 한국법제연구원     | 3.30~9.26.    | 제한경쟁 | 54   |
|                       | 2022년도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연구                        | 인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5.26.~11.22.  | 제한경쟁 | 49   |
| 행정법제 혁신 (1032-302)    | 2022년도 입법영향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 3.18. ~ 9.14. | 수의   | 106  |
|                       | 2022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3.14. ~ 9.10. | 수의   | 134  |

|                      |                                              |              |              |    |    |
|----------------------|----------------------------------------------|--------------|--------------|----|----|
|                      |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안 방안 연구 1           | 한국공법학회       | 3.11. ~ 9.8. | 수의 | 36 |
|                      |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안 방안 연구 2           | 한국행정법학회      | 3.08. ~ 9.5. | 수의 | 36 |
| 외국법제기관 교류 (1034-301) | 아시아 법제 현안에 기반한 외국법제기관 법제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추진전략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5.17.~11.30. | 수의 | 45 |
| 법제정책연구 개발 (1035-300) | 입법과정에서의 정부 내 협의절차 제도화 방안 연구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4.26.~10.26. | 수의 | 40 |
|                      |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               |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 8.19.~12.19. | 수의 | 34 |

자료: 법제처

## 【 2023년 법제처 수행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주제                                                  | 수행자          | 계약기간         | 계약방식 | 계약금액 |
|-----------------------|-----------------------------------------------------|--------------|--------------|------|------|
|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1031-301) | 북한의 환경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3.24.~10.31. | 제한경쟁 | 37   |
|                       | 과학기술·지적재산권 및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연구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3.29.~10.31. | 수의   | 27   |
| 법제정비 (1032-301)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자 등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 한국토지공법학회     | 5.17.~11.15. | 제한경쟁 | 47   |
|                       |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 의무 부담완화 법령정비 방안 연구               | 아이앤아이리서치     | 5.15.~11.13. | 수의   | 48   |
|                       |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 4.28.~11.14. | 수의   | 59   |
|                       |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1)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5.2.~10.30.  | 제한경쟁 | 60   |
|                       |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2)                  |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4.28.~10.24. | 제한경쟁 | 58   |
|                       |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 6.7.~11.24.  | 제한경쟁 | 68   |
|                       |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 6.2.~11.24.  | 제한경쟁 | 70   |
| 행정법제 혁신 (1032-302)    |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실태·국민인식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4.18.~11.17. | 수의   | 143  |
|                       | 부관의 독립 취소·쟁송에 관한 입안방안 연구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3.29.~7.21.  | 수의   | 15   |
|                       | 의제된 인허가 취소·철회와 그 효력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3.24.~7.21.  | 수의   | 15   |

|                            |                                              |                       |              |      |     |
|----------------------------|----------------------------------------------|-----------------------|--------------|------|-----|
|                            | 행정규칙의 효력 및 한계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 건국대학교<br>글로벌<br>산학협력단 | 3.24.~7.21.  | 수의   | 15  |
|                            | 외국인의 행정법 적용 일반기준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 한국법제<br>발전연구소         | 3.29.~7.21.  | 수의   | 15  |
|                            | 제재처분의 일반적 감경기준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 한국행정<br>법학회           | 5.2.~8.31.   | 수의   | 9   |
|                            | 대행 제도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 한국행정법<br>학회           | 4.24.~8.21.  | 수의   | 9   |
|                            | 2023년 입법영향분석:<br>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 한국법제<br>연구원           | 3.30.~10.13. | 수의   | 82  |
|                            | 2023년 입법영향분석:<br>위생용품 관리 제도                  | 한국법제<br>연구원           | 3.30.~9.25.  | 수의   | 52  |
|                            | 2023년 입법영향분석:<br>장애인 등록제                     | 한국보건<br>사회연구원         | 3.14.~10.06. | 수의   | 64  |
|                            |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연 나이<br>규정 법령 정비방안 연구          | 한국공법<br>학회            | 3.15.~8.12.  | 제한경쟁 | 145 |
| 외국법제<br>기관교류<br>(1034-301) | 주요 권역별 법제 현안 공동대응<br>사례 연구 및 아시아 권역 적용<br>방안 | 한국법제<br>연구원           | 6.20.~11.30. | 수의   | 45  |
| 법제정책<br>연구개발<br>(1035-300) | 중소기업 인·허가 규제 유연화<br>정비방안                     | 서울대학교<br>산학협력단        | 5.30.~11.30. | 제한경쟁 | 74  |

자료: 법제처

## 【 2024년 법제처 수행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주제                                 | 수행자                | 계약기간         | 계약방식 | 계약금액 |
|-----------------------------|------------------------------------|--------------------|--------------|------|------|
| 세계법제정보<br>서비스<br>(1031-301) |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법제 연구                  | 국민대학교<br>산학협력단     | 3.22.~10.31. | 제한경쟁 | 39   |
| 법제정비<br>(1032-301)          | 사업단계별 사업자 부담 완화를<br>위한 정비방안 연구     | 목포대학교<br>산학협력단     | 6.17~12.16.  | 수의   | 48   |
|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법령<br>정비방안 연구        | (주)한국정책<br>능력진흥원   | 5.31.~11.30. | 수의   | 43   |
|                             | 자격·면허업무영역에서의 인공지능<br>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국법제<br>연구원        | 3.6~11.2.    | 제한경쟁 | 68   |
|                             |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br>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 한국입법<br>학회         | 5.30.~10.31. | 제한경쟁 | 18   |
|                             |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분석 및<br>쟁점 연구         | 행정법과<br>법치주의<br>학회 | 6.3.~12.3.   | 제한경쟁 | 50   |
|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br>방안 연구         | 한국법제<br>연구원        | 6.4.~12.4.   | 수의   | 63   |
|                             |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 (재)한국법<br>령정보원     | 2.27.~11.27. | 제한경쟁 | 40   |

|                         |                                                 |               |              |      |    |
|-------------------------|-------------------------------------------------|---------------|--------------|------|----|
|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3.4.~10.28.  | 제한경쟁 | 68 |
|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재산·가족관계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3.4.~10.28.  | 제한경쟁 | 68 |
| 행정법제 혁신<br>(1032-302)   | 2024년 입법영향분석: 민간자격증 제도                          | 한국법제연구원       | 3.18.~10.04. | 수의   | 90 |
|                         | 2024년 입법영향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 한국법제연구원       | 3.18.~10.09. | 수의   | 90 |
|                         | 2024년 입법영향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6.~10.11. | 제한경쟁 | 82 |
|                         | 자동적 처분 도입 촉진 및 입법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단법인 자치법 연구원  | 3.04.~6.30.  | 수의   | 39 |
|                         |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 방안 연구                  | 사단법인 기술과법 연구소 | 3.26.~9.13.  | 수의   | 76 |
|                         |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한국행정법학회       | 7.26.~10.23. | 제한경쟁 | 27 |
| 외국법제기관 교류<br>(1034-301)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3.14.~11.30. | 수의   | 45 |
|                         |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발전 현황 및 상호 협력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4.19.~11.30. | 제한경쟁 | 45 |
| 법제정책연구 개발<br>(1035-300) |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심사기준·입법모델 연구 | (사)한국행정법학회    | 4.25.~11.13. | 제한경쟁 | 48 |
|                         | 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9.13.~12.13. | 수의   | 20 |

자료: 법제처

□ 특히,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34건의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2건(35.3%)을 한국법제연구원과 체결하였고,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법제분야 연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기관에 연구용역이 편중되는 것은 다양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함에 한계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있어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전문법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제한적이고, 정책연구용역의 건당 단가가 낮아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수의계약은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연구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연구기관의 편중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로 하여금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sup>36)</sup>을 개정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모든 연구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sup>37)</sup>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36) 구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7) 개정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법제처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의 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sup>38)</sup>,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등 용역에 있어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구용역비(260목)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 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 최근 5년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br>(세부사업, 목)                       | 2021년         |               |               | 2022년<br>(추경) |               |               | 2023년         |               |               | 2024년         | 2025년         |
|----------------------------------------|---------------|---------------|---------------|---------------|---------------|---------------|---------------|---------------|---------------|---------------|---------------|
|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안           |
| <b>일반회계(총 액)</b>                       | <b>40,737</b> | <b>40,737</b> | <b>37,291</b> | <b>42,953</b> | <b>42,953</b> | <b>40,672</b> | <b>43,728</b> | <b>43,728</b> | <b>42,622</b> | <b>45,418</b> | <b>46,284</b> |
| <b>① 인건비</b><br>(직접수행, 1001-100)       | 22,430        | 22,453        | 20,058        | 22,109        | 22,109        | 20,771        | 22,142        | 22,077        | 21,734        | 22,612        | 23,780        |
| ◦인건비(110)                              | 22,430        | 22,453        | 20,058        | 22,109        | 22,109        | 20,771        | 22,142        | 22,077        | 21,734        | 22,612        | 23,780        |
| <b>② 기본경비</b><br>(직접수행, 1011)          | 3,681         | 3,658         | 3,324         | 4,100         | 4,100         | 3,671         | 4,394         | 4,459         | 4,234         | 5,032         | 5,287         |
| ◦인건비(110)                              | 473           | 473           | 422           | 506           | 506           | 466           | 518           | 583           | 487           | 515           | 485           |
| ◦운영비(210)                              | 2,175         | 2,152         | 2,020         | 2,202         | 2,202         | 2,030         | 2,520         | 2,496         | 2,377         | 2,779         | 3,103         |
| ◦여 비(220)                              | 182           | 182           | 58            | 168           | 168           | 124           | 166           | 190           | 185           | 202           | 244           |
| ◦업무추진비(240)                            | 142           | 142           | 142           | 130           | 130           | 130           | 142           | 142           | 141           | 149           | 179           |
| ◦직무수행경비(250)                           | 401           | 401           | 401           | 410           | 410           | 410           | 426           | 426           | 426           | 437           | 437           |
| ◦보전금(310)                              | 0.1           | 0.1           | -             | 0.1           | 0.1           | -             | 0.1           | 0.1           | -             | 0.1           | 0.1           |
| ◦민간이전(320)                             | 93            | 93            | 83            | 97            | 97            | 74            | 102           | 102           | 102           | 108           | 107           |
| ◦건설비(420)                              | 55            | 55            | 55            | 55            | 55            | 55            | 251           | 251           | 251           | 75            | 160           |
| ◦유형자산(430)                             | 130           | 130           | 130           | 132           | 132           | 132           | 269           | 269           | 265           | 315           | 521           |
| ◦무형자산(440)                             | 30            | 30            | 13            | 400           | 400           | 250           | -             | -             | -             | 450           | 50            |
| <b>③ 법령정보제공</b><br>(직접수행, 1031-300)    | 1,925         | 1,925         | 1,877         | 2,142         | 2,142         | 2,086         | 1,950         | 1,959         | 1,890         | 1,718         | 1,552         |
| ◦인건비(110)                              | 86            | 86            | 82            | 119           | 119           | 116           | 123           | 131           | 130           | 135           | 139           |
| ◦운영비(210)                              | 1,625         | 1,625         | 1,603         | 1,386         | 1,386         | 1,366         | 1,755         | 1,755         | 1,688         | 1,507         | 1,336         |
| ◦여 비(220)                              | 29            | 29            | 12            | 29            | 29            | 15            | 30            | 30            | 30            | 30            | 30            |
| ◦업무추진비(240)                            | 18            | 18            | 18            | 18            | 18            | 18            | 19            | 19            | 19            | 19            | 19            |
| ◦연구용역비(260)                            | 150           | 150           | 147           | 568           | 568           | 555           | -             | -             | -             | -             | -             |
| ◦민간이전(320)                             | 17            | 17            | 15            | 22            | 22            | 16            | 23            | 23            | 23            | 26            | 27            |
| <b>④ 세계법제정보서비스</b><br>(직접수행, 1031-301) | 769           | 769           | 736           | 856           | 856           | 796           | 1,116         | 1,116         | 1,085         | 1,662         | 1,702         |
| ◦인건비(110)                              | 67            | 67            | 65            | 68            | 68            | 39            | 35            | 35            | 34            | 37            | 38            |
| ◦운영비(210)                              | 594           | 594           | 578           | 19            | 19            | 18            | 18            | 18            | 18            | 128           | 116           |
| ◦여 비(220)                              | 7             | 7             | 2             | 7             | 7             | 4             | 7             | 7             | 6             | 7             | 7             |
| ◦업무추진비(240)                            | 15            | 15            | 15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 ◦연구용역비(260)                            | 28            | 28            | 25            | 28            | 28            | 25            | 69            | 69            | 64            | 40            | 90            |
| ◦민간이전(320)                             | 13            | 13            | 10            | 721           | 721           | 697           | 974           | 974           | 950           | 1,438         | 1,438         |
| ◦유형자산(430)                             | 46            | 46            | 41            | -             | -             | -             | -             | -             | -             | -             | -             |

| 구 분<br>(세부사업, 목)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2025년 |
|----------------------------------------|-------|----------|-------|-------|----------|-------|-------|----------|-------|-------|-------|
|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안   |
| ⑤ 찾가쉬운생활법령<br>정보서비스<br>(직접수행 1031-302) | 1,047 | 1,047    | 1,014 | 1,049 | 1,049    | 1,020 | 1,051 | 1,051    | 1,022 | 1,328 | 1,362 |
| ◦인건비(110)                              | 27    | 27       | 23    | 28    | 28       | 28    | 29    | 29       | 28    | 29    | 30    |
| ◦운영비(210)                              | 1,004 | 1,004    | 976   | 31    | 31       | 31    | 32    | 32       | 30    | 29    | 17    |
| ◦여 비(220)                              | 1     | 1        | 0.5   | 1     | 1        | 0.5   | 1     | 1        | 1     | 1     | 1     |
| ◦업무추진비(24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민간이전(320)                             | 5     | 5        | 5     | 979   | 979      | 951   | 979   | 979      | 953   | 1,259 | 1,304 |
| ⑥ 법령심사지원<br>(직접수행, 1032-300)           | 370   | 370      | 337   | 410   | 410      | 367   | 381   | 381      | 354   | 335   | 311   |
| ◦인건비(110)                              | 93    | 93       | 83    | 95    | 95       | 82    | 97    | 97       | 93    | 100   | 103   |
| ◦운영비(210)                              | 184   | 184      | 176   | 174   | 174      | 155   | 178   | 178      | 158   | 129   | 110   |
| ◦여 비(220)                              | 18    | 18       | 3     | 17    | 17       | 16    | 18    | 18       | 15    | 18    | 9     |
| ◦업무추진비(240)                            | 46    | 46       | 46    | 44    | 44       | 44    | 46    | 46       | 46    | 46    | 46    |
| ◦연구용역비(260)                            | -     | -        | -     | 40    | 40       | 36    | -     | -        | -     | -     | -     |
| ◦보전금(310)                              | 12    | 12       | 1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 ◦민간이전(320)                             | 17    | 17       | 17    | 18    | 18       | 12    | 19    | 19       | 19    | 20    | 20    |
| ⑦ 법제정비<br>(직접수행, 1032-301)             | 1,383 | 1,383    | 1,300 | 1,493 | 1,493    | 1,426 | 1,307 | 1,298    | 1,211 | 1,324 | 1,184 |
| ◦인건비(110)                              | 331   | 331      | 303   | 319   | 319      | 288   | 328   | 319      | 259   | 333   | 344   |
| ◦운영비(210)                              | 531   | 531      | 527   | 528   | 528      | 518   | 407   | 407      | 397   | 342   | 322   |
| ◦여 비(220)                              | 39    | 39       | 9     | 37    | 37       | 28    | 39    | 39       | 37    | 39    | 32    |
| ◦업무추진비(240)                            | 39    | 39       | 39    | 37    | 37       | 36    | 39    | 39       | 39    | 39    | 39    |
| ◦연구용역비(260)                            | 370   | 370      | 350   | 501   | 501      | 500   | 421   | 421      | 407   | 496   | 371   |
| ◦보전금(310)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 ◦민간이전(320)                             | 64    | 64       | 62    | 62    | 62       | 47    | 64    | 64       | 64    | 65    | 67    |
| ⑧ 행정법제 혁신<br>(직접수행, 1032-302)          | 300   | 300      | 277   | 459   | 459      | 430   | 730   | 730      | 684   | 747   | 486   |
| ◦운영비(210)                              | 108   | 108      | 106   | 103   | 103      | 103   | 108   | 108      | 106   | 105   | 64    |
| ◦여 비(220)                              | 8     | 8        | 6     | 8     | 8        | 8     | 8     | 8        | 8     | 8     | 8     |
| ◦업무추진비(240)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연구용역비(260)                            | 180   | 180      | 161   | 344   | 344      | 315   | 610   | 610      | 566   | 630   | 410   |

| 구 분<br>(세부사업, 목)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2025년 |
|-------------------------------------------|-------|----------|-------|-------|----------|-------|-------|----------|-------|-------|-------|
|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예산액   | 예산안   |
| ⑨ 법제업무정보화추진<br>(직접수행, 1033-500)           | 7,051 | 7,051    | 6,878 | 8,801 | 8,801    | 8,647 | 8,871 | 8,871    | 8,687 | 8,744 | 8,046 |
| ◦인건비(110)                                 | 81    | 81       | 77    | 83    | 83       | 82    | 85    | 85       | 83    | 87    | 90    |
| ◦운영비(210)                                 | 5,439 | 5,439    | 5,312 | 4,067 | 4,067    | 4,006 | 3,742 | 3,742    | 3,632 | 4,081 | 4,660 |
| ◦여 비(220)                                 | 5     | 5        | 3     | 5     | 5        | 5     | 4     | 4        | 4     | 4     | 4     |
| ◦업무추진비(240)                               | 26    | 26       | 26    | 26    | 26       | 26    | 24    | 24       | 24    | 24    | 24    |
| ◦연구용역비(260)                               | -     | -        | -     | 2,322 | 2,322    | 2,274 | 2,734 | 2,734    | 2,705 | 2,030 | 701   |
| ◦민간이전(320)                                | 15    | 15       | 14    | 1,729 | 1,729    | 1,703 | 1,730 | 1,730    | 1,711 | 1,978 | 2,062 |
| ◦유형자산(430)                                | 1,485 | 1,485    | 1,446 | 569   | 569      | 551   | 552   | 552      | 528   | 541   | 506   |
| ⑩ 법제교육 및 법제<br>전문인력육성<br>(직접수행, 1034-300) | 1,394 | 1,394    | 1,184 | 1,182 | 1,182    | 1,122 | 1,470 | 1,470    | 1,412 | 1,555 | 2,281 |
| ◦인건비(110)                                 | 55    | 55       | 51    | 56    | 56       | 55    | 58    | 58       | 57    | 126   | 173   |
| ◦운영비(210)                                 | 835   | 835      | 750   | 760   | 760      | 749   | 781   | 781      | 758   | 1,040 | 1,580 |
| ◦여비(220)                                  | 133   | 133      | 33    | 126   | 126      | 91    | 135   | 135      | 132   | 139   | 142   |
| ◦업무추진비(240)                               | 41    | 41       | 39    | 39    | 39       | 39    | 41    | 41       | 41    | 41    | 41    |
| ◦연구용역비(260)                               | 320   | 320      | 302   | 190   | 190      | 178   | 414   | 414      | 386   | 190   | 190   |
| ◦민간이전(320)                                | 11    | 11       | 9     | 11    | 11       | 10    | 12    | 12       | 12    | 19    | 24    |
| ◦건설비(420)                                 | -     | -        | -     | -     | -        | -     | -     | -        | -     | -     | 100   |
| ◦유형 자산(430)                               | -     | -        | -     | -     | -        | -     | 29    | 29       | 26    | -     | 30    |
| ⑪ 외국법제기관교류<br>(직접수행, 1034-301)            | 317   | 317      | 240   | 278   | 278      | 262   | 243   | 243      | 234   | 293   | 243   |
| ◦운영비(210)                                 | 149   | 149      | 144   | 154   | 154      | 145   | 130   | 130      | 128   | 130   | 130   |
| ◦여 비(220)                                 | 65    | 65       | 2     | 61    | 61       | 59    | 53    | 53       | 51    | 53    | 53    |
| ◦업무추진비(240)                               | 13    | 13       | 13    | 13    | 13       | 13    | 10    | 10       | 10    | 10    | 10    |
| ◦연구용역비(260)                               | 90    | 90       | 81    | 50    | 50       | 45    | 50    | 50       | 45    | 100   | 50    |
| ⑫ 법제정책연구개발<br>(직접수행, 1035-300)            | 70    | 70       | 68    | 74    | 74       | 74    | 74    | 74       | 74    | 68    | 50    |
| ◦연구용역비(260)                               | 70    | 70       | 68    | 74    | 74       | 74    | 74    | 74       | 74    | 68    | 50    |

## 참고자료

## 2024년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24. 9, 단위: 천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법제정보<br>서비스  | 법령정보제공                | 소 계 |       | 1,718,000 | 1,170,356 | 68.1%  |
|              |                       | 110 | 인건비   | 135,000   | 96,177    | 71.2%  |
|              |                       | 210 | 운영비   | 1,507,405 | 1,019,711 | 67.6%  |
|              |                       | 220 | 여비    | 30,305    | 23,183    | 76.5%  |
|              |                       | 240 | 업무추진비 | 19,290    | 15,478    | 80.2%  |
|              |                       | 320 | 민간이전  | 26,000    | 15,807    | 60.8%  |
|              | 세계법제<br>정보서비스         | 소 계 |       | 1,662,000 | 1,561,636 | 94.0%  |
|              |                       | 110 | 인건비   | 37,000    | 25,982    | 70.2%  |
|              |                       | 210 | 운영비   | 127,637   | 92,128    | 72.2%  |
|              |                       | 220 | 여비    | 6,633     | 5,316     | 80.1%  |
|              |                       | 240 | 업무추진비 | 12,730    | 12,730    | 100.0% |
|              |                       | 260 | 연구용역비 | 40,000    | 38,520    | 96.3%  |
|              |                       | 320 | 민간이전  | 1,438,000 | 1,386,960 | 96.5%  |
|              | 찾기쉬운<br>생활법령정보<br>서비스 | 소 계 |       | 1,328,000 | 1,268,330 | 95.5%  |
|              |                       | 110 | 인건비   | 29,000    | 21,124    | 72.8%  |
|              |                       | 210 | 운영비   | 28,706    | 15,030    | 52.4%  |
|              |                       | 220 | 여비    | 1,154     | 1,154     | 100.0% |
|              |                       | 240 | 업무추진비 | 9,729     | 9,297     | 95.6%  |
|              |                       | 320 | 민간이전  | 1,259,411 | 1,221,725 | 97.0%  |
| 정부입법<br>총괄관리 | 법령심사지원                | 소 계 |       | 335,000   | 196,878   | 58.8%  |
|              |                       | 110 | 인건비   | 100,000   | 54,853    | 54.9%  |
|              |                       | 210 | 운영비   | 128,562   | 50,896    | 39.6%  |
|              |                       | 220 | 여비    | 18,172    | 17,390    | 95.7%  |
|              |                       | 240 | 업무추진비 | 46,266    | 40,766    | 88.1%  |
|              |                       | 310 | 보전금   | 22,000    | 22,000    | 100.0% |
|              |                       | 320 | 민간이전  | 20,000    | 10,973    | 54.9%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 법제정비                   | 소 계 |       | 1,324,000 | 907,605   | 68.6%  |
|                   |                        | 110 | 인건비   | 333,000   | 215,483   | 64.7%  |
|                   |                        | 210 | 운영비   | 342,306   | 213,347   | 62.3%  |
|                   |                        | 220 | 여비    | 39,447    | 36,947    | 93.7%  |
|                   |                        | 240 | 업무추진비 | 39,247    | 36,430    | 92.8%  |
|                   |                        | 260 | 연구용역비 | 496,000   | 381,686   | 77.0%  |
|                   |                        | 310 | 보전금   | 9,000     | 0         | 0.0%   |
|                   |                        | 320 | 민간이전  | 65,000    | 23,712    | 36.5%  |
|                   | 행정법제 혁신                | 소 계 |       | 747,000   | 524,917   | 70.3%  |
|                   |                        | 210 | 운영비   | 105,341   | 62,800    | 59.6%  |
|                   |                        | 220 | 여비    | 7,601     | 6,800     | 89.5%  |
|                   |                        | 240 | 업무추진비 | 4,058     | 3,600     | 88.7%  |
|                   |                        | 260 | 연구용역비 | 630,000   | 451,717   | 71.7%  |
| 법제업무<br>정보화<br>지원 | 법제업무<br>정보화추진<br>(정보화) | 소 계 |       | 8,744,000 | 7,703,410 | 88.1%  |
|                   |                        | 110 | 인건비   | 87,000    | 62,745    | 72.1%  |
|                   |                        | 210 | 운영비   | 4,080,890 | 3,514,485 | 86.1%  |
|                   |                        | 220 | 여비    | 4,000     | 4,000     | 100.0% |
|                   |                        | 240 | 업무추진비 | 23,707    | 23,152    | 97.7%  |
|                   |                        | 260 | 연구용역비 | 2,030,391 | 1,618,375 | 79.7%  |
|                   |                        | 320 | 민간이전  | 1,977,512 | 1,943,152 | 98.3%  |
|                   |                        | 430 | 유형자산  | 540,500   | 537,501   | 99.4%  |
| 법제<br>전문성<br>향상   | 법제교육 및<br>법제전문인력<br>육성 | 소 계 |       | 1,555,000 | 1,002,257 | 64.5%  |
|                   |                        | 110 | 인건비   | 126,004   | 83,401    | 66.2%  |
|                   |                        | 210 | 운영비   | 1,040,286 | 601,139   | 57.8%  |
|                   |                        | 220 | 여비    | 138,796   | 115,183   | 83.0%  |
|                   |                        | 240 | 업무추진비 | 41,264    | 36,700    | 88.9%  |
|                   |                        | 260 | 연구용역비 | 190,000   | 148,277   | 78.0%  |
|                   |                        | 320 | 민간이전  | 18,650    | 17,557    | 94.1%  |
|                   | 외국법제<br>기관교류           | 소 계 |       | 293,000   | 235,839   | 80.5%  |
|                   |                        | 210 | 운영비   | 129,692   | 97,029    | 74.8%  |
|                   |                        | 220 | 여비    | 53,119    | 53,119    | 100.0% |
|                   |                        | 240 | 업무추진비 | 10,189    | 9,171     | 90.0%  |
|                   |                        | 260 | 연구용역비 | 100,000   | 76,520    | 76.5%  |
| 정책연구<br>개발        | 법제정책<br>연구개발           | 소 계 |       | 68,000    | 34,909    | 51.3%  |
|                   |                        | 260 | 연구용역비 | 68,000    | 34,909    | 51.3%  |